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방안

2005. 1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1. 연구 범위	2
2. 연구 수행방법	3
 제2장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개념 정립	4
제1절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의 의미	4
1.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개념	4
2. 협력체계의 개념 및 조건	6
3. 정부부처간 정책적 협력체계 유형	10
제2절 국내외 사례 분석	15
1. 국내 사례 분석	15
2. 해외 사례 분석	20
제3절 시사점	27
1. 조직 부분	27
2. 내용 부분	29
 제3장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분석	31
제1절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 구분	31
1.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현황	31
2.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	33

제2절 정부부처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34
1. 농림부 사업	34
2. 농촌진흥청 사업	36
3. 산림청 사업	37
4. 해양수산부 사업	42
5. 행정자치부 사업	44
6. 환경부 관련 사업	47
제3절 종합분석	49
1.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49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제4장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	56
제1절 협력체계 구축 방안	56
1. 기본 방향	56
2. 협력체계 구축의 대안 설정	58
3. 협의체 구성	62
제2절 협력체계 운영 방안	68
1. 기본 방향	68
2. 운영 방안	70
제3절 협력체계 추진 과제	84
1. 기본 방향	84
2. 전략별 추진과제	86
 제5장 결론 및 제언	97
 참고문헌	100

표 차례

<표 2-1> 문화관광부와 타 부처 업무 협력합의서 체결 현황	10
<표 2-2> 타 부처와의 관광관련 주요 합의 내용	11
<표 2-3>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되는 사항	16
<표 2-4> 위원회 협의 사항	19
<표 2-5> 프랑스 농촌관광 상설회의의 조직	21
<표 2-6> 신(新)그린투어리즘 종합추진대책의 4대전략	26
<표 3-1> 정부부처별 지역단위 개발사업 현황	31
<표 3-2> 각 부처별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33
<표 3-3> 녹색농촌체험마을 개요	35
<표 3-4> 연도별 사업량과 사업비	35
<표 3-5> 농촌전통테마마을 개요	36
<표 3-6> 연도별 사업량과 사업비	37
<표 3-7> 산촌종합개발사업 개요	38
<표 3-8> 연도별 사업량과 진행현황	38
<표 3-9>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개요	39
<표 3-10>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개요표	40
<표 3-11>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개요	41
<표 3-1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개요	42
<표 3-13> 연도별 사업량과 사업비	43
<표 3-14>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개요	44
<표 3-15> 연도별 사업량과 사업비	45
<표 3-16>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개요	46
<표 3-17>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상황	47
<표 3-18>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사업 개요표	48
<표 3-19> 각 부처별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49

<표 3-20> 관광자원개발사업 세부사업 내용 분석	50
<표 3-21> 지역단위 개발사업에서 주요 유사사업 사례	52
<표 3-22>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
<표 4-1>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 대안 1의 장단점	59
<표 4-2>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 대안 2의 장단점	60
<표 4-3>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 대안 3의 장단점	61
<표 4-4>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 대안 4의 장단점	62
<표 4-5> 주요 중앙부처별 관광 관련 업무 내용	63
<표 4-6> 본위원회 구성	65
<표 4-7> 경관관련 제도 현황	90
<표 4-8> 영국의 전원지킴이 사업에서의 경관관리 계약 내용	9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3
[그림 2-1]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 조직도	18
[그림 4-1] 협력체계 구축 대안	58
[그림 4-2] 협력체계 운영방안	69
[그림 4-3] 사전협의제도 운영 절차	81
[그림 4-4] 협력체계 추진과제 기본 방향	8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5도2村 시대의 도래 등에 기인하여 관광자원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 추진되고 있다. 2000년 이전의 지역개발 사업들은 물리적인 주거 환경 개선사업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관광자원개발사업들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 관광수요의 증가와 다양화, 관광자원 개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부처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처 성격에 맞는 개발 수단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0개 정부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38개 지역단위의 중앙부처 지역개발지원사업 중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2개 사업을 포함하여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7개 부처의 총 12개 사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역할분담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체계 구축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현실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부처별 유사사업 추진 및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등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상호간 실질적 조정 기능 부재, 사후 관리 미흡,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사업별 특화개발 저조, 지역별 균형개발 저해, 추진사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은

공동으로 기존 부처별로 추진하던 관광자원개발 사업들에 대해 공동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 작성,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간 협력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하기에는 내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협력방안 추진에서 관광관련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배제되면서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지고 실질적인 지역 고유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 정책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사업 정책 추진의 주무부처로서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 운영 방안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첫째,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정부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부처간 조정, 통합 기능이 강화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협력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능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협력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지원방안 및 관련 부처 상호간 협조방안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부부처간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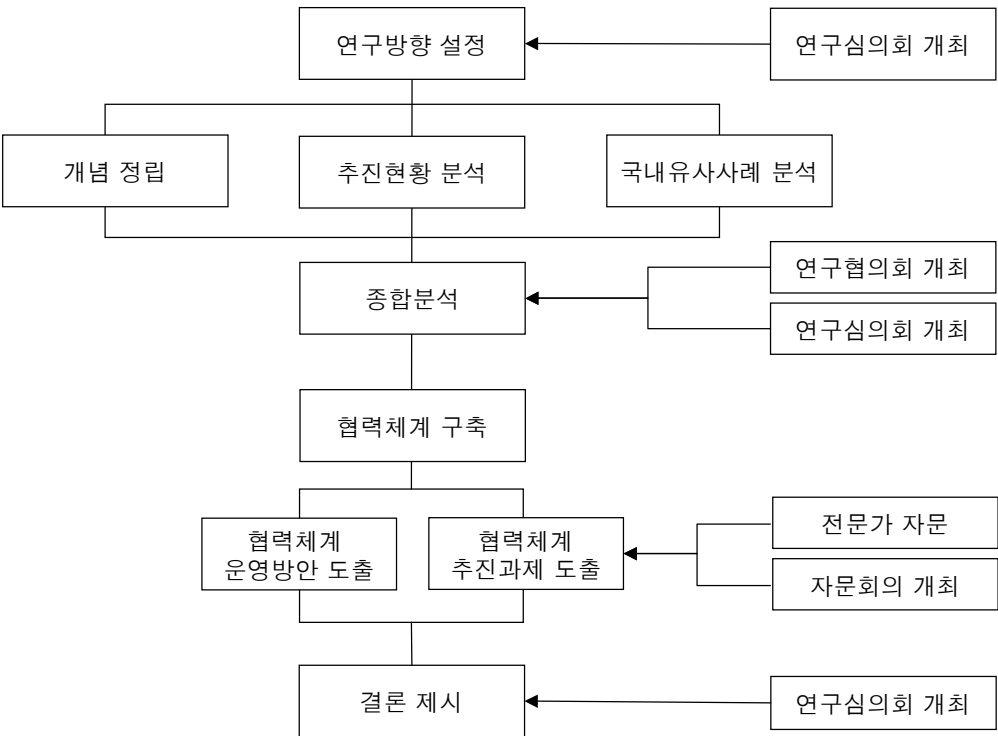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전국
- 내용적 범위: 정부 부처간 관광자원개발 협력체계 구축
- 시간적 범위: 2004년 기준

2. 연구 수행방법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련 문헌 연구, 국내외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정부 각 부처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광자원개발사업 개념 정립을 위한 선행연구 및 이론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부부처 상호간의 협력 및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산하 연구원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자문을 발주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제2장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개념 정립

제1절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의 의미

1.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개념

가. 관광자원의 개념 및 유형

관광자원이란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유발시키거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매력적 요소(attractiveness)를 지닌 유·무형의 자연적·인문적 관광 대상을 의미한다(이후 석 등, 2002). 또 관광자원은 관광대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관광대상은 관광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유인요소와 관광매력을 향유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관광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최규환, 2004). 21세기에 들어서는 종래의 관광자원 개념뿐만 아니라 서비스 요소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관광자원을 설명하기도 한다(박석희, 2001). 서비스 요소적 측면에서는 관광자원은 관광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투입요소를 의미하게 된다. 관광자원의 기본요건이 매력성이므로 자연적 매력, 인문적 매력, 관광시설 매력을 지닌 대상은 협의의 관광자원이며 기타 공급처리시설, 편의시설, 인력, 시간, 여행 등 생산요소가 포함되면 광의의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김영준·최승묵, 2004).

이러한 관광자원의 유형 구분은 자원성격, 이용수준, 제도, 자원입지, 관리주체, 체재기간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박석희, 2001; Gunn, 1994) 이중 자원성격에 의한 유형 구분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Gunn(1994)은 관광자원을 중심적 자원 속성에 따라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철원(1999)은 관광자원을 자연 의존형, 문화자원 의존형, 인공시설자원 의존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최근에는 관광시장의 다양화에 따라 관광자원의 유형 구분이 좀더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WTO(2001)는 관광시장을 해양관광, 스포츠관광, 모험관광, 자연관광, 문화관광, 도시관광, 농촌관광, 크루즈관광, 테마파크관광, 컨벤션관광 등으로 구분하였다.

나.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개념

관광개발이란 관광자원을 정비하여 관광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이라고 보는 협의의 개념과 관광개발과 관광활동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비롯한 시설, 서비스, 산업, 교통 등 제반 관광요소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규정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석희, 2001). 이러한 관광개발이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써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부처 및 지역에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관광개발 사업은 대상 공간의 범위에 따라 점적 단위 관광매력물 및 시설을 의미하는 관광지점, 관광명소 및 관광시설이 집적된 특정 지구를 의미하는 면적 관광지구, 관광지점 및 관광지구가 선적, 면적으로 네트워크화한 관광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개발 유형은 부처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운용되고 있다(김영준·최승목, 2004).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역의 고유 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국민관광 기회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기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기존 대규모 개발방식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사업내용 측면에서 명확성과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첫째, 관광자원개발사업은 타 관광개발사업이나 유사 개발사업과는 다른 명확한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관광개발 체계 내에서는 중소 규모의 관광자원 개발수단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 개발만으로는 안되며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하드웨어 사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 등 자원의 개발적 측면 외에 관리 운영 등

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내용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 사업에 있어서도 주제와 형태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유형이 포함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문화자원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에서 예술문화 혹은 생활문화 등이 주제가 된 자원개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주제뿐만 아니라 개발형태 측면에서도 과거 점적 개발 위주에서 거리 등 선적 혹은 마을이나 공원 등 면적 개발형태도 포함되어야 한다(김영준·최승목, 2004).

이러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관광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외에도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보다 실효성을 갖는 정책수단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업간 기능적 차별성이 유지되면서 부처간 협력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협력체계의 개념 및 조건

가. 협력체계의 개념

협력체계의 개념은 “어떤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Jamal and Getz, 1995: 186-187). Abramson & Rosenthal(1995)은 협력체계의 강점과 함께 어려움이 있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협력체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득으로는 폭넓고 포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과 해결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소유영역이 넓어지고, 지역사회의 자원과 욕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며 창의성도 높아지게 된다. 모험적 사업을 시도할 경우에도 일과 비용 및 위험을 공유할 수 있고 정치적 동의를 모으는 것이 수월하다.

그러나 협력체계는 먼저 취득한 권리에 대한 강제적인 조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협력체계에 있어서 자율성은 조직, 전문가, 부서에 대한 책임성에 의해 조절되어야만 한다. Abramson & Rosenthal이 언급한 어려움 외에도 협력체계의 장애로 위계와 평등성 및 손상가능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협력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인 영역이나 조직은 협력적 문제를 위해 자율성의 일정 정도를 희생하여야 한다.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진다. 협

협력체계에 있어 위험요인과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은 협력체계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협력체계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힘의 균형이다. 협력체계는 참여한 모든 주체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주장이 강조되고, 이권을 찾으려는 경향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따라서 힘의 균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협력은 그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협력체계의 참여 동인으로는 재정적 또는 사업의 내용에서의 일정 정도의 관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직간 연계·통합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자원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Aldrich 와 Pfeffer는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자원의존모델(resource dependence model)'을 발전시켰는데, 요약하면 자원이 많은 행위자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행위자에 비해 힘을 갖게 되며, 자원이 적은 행위자일수록 자원이 많은 행위자에게 더 의존적이 된다는 것이다(이현주 외, 2003:68).

관광분야에서도 기존의 관광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이 따로따로 제각각 작용하고 움직이던 경향에서 같이 협력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어떠한 기업이나 정부조직도 고립되어서는 운영될 수 없다. 관광경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직구조가 중요하며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관광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Inskeep, 1991). 정부기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개인과 기업사이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며, 관광 체계의 다양한 요소들을 협력하게 만드는 새로운 방식과 과정의 개발이 요구된다(Jamal & Getz, 1995). 관광과 관련한 조직 간의 협력에 대한 연구를 협력의 가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광조직간 협력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영역간 기획(intersector planning), 파트너십(partnership), 거래적 기획(transactive planning)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자원을 끌어들이므로써 지역이 안고 있는 자원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간주되며, 협회(association)구성이나 공동포럼을 통한 협력을 통하여 협력적 마케팅 전략의 개발과 커뮤니케이션의 향상 및 로비강화가 가능하다는 데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관광분야는 그 분배시스템의 사슬이 길며, 각각의 공급요소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조직목표와 지역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직간 협력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박기홍, 1997: 58). 관광진흥과 관련된 정부의 업무능률 향상과

사업성과의 제고는 관광부문에 대한 진흥,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정부관광기구와 관광에 정책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부부처, 그리고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가 상호조정예 의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 이들 기관, 단체 및 기업은 전체로서 하나의 관광관리체계(System of Tourism Management)를 구성한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관련기관별로 업무기능과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민간부문은 역내국가나 국제기구와의 국가협력에 있어서 중앙/지방정부와 관광공사와 같은 공공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러한 구성요인들이 국내관광환경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협력체계의 조건

조직간 협력체계에서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성체가 더 유용할 것이며 단, 실무자의 협력을 장려하는 구성이 되기 위하여 기관장의 협력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협의구조가 좀 더 현실적인 정합성을 갖는 것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인력이다. 네트워크는 본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목적에 대한 동기와 의욕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참여하는 조직이나 단체의 주체성과 대등성의 보장이다. 본래 단독이나 조직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갖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구성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선 각자의 소속된 조직이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영역과 내용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등한 참여의 기회와 민주적인 의견의 개진과 주어진 사업과 내용에 공평한 참여가 이루어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명백한 목표이다. 무엇 때문에 네트워크를 만들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분명치 않으면 단순한 친목 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과 그리고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활동과 역할에

는 무책임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네트워크의 규모 및 참여자의 수준, 정도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안정된 사무국과 책임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과 조직의 본래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잘못하면 책임이 회피되며, 활동이 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무국의 정비와 이를 주도하고, 조직의 활성화에 도울 인력이 정확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자금의 확보이다. 네트워크 자체를 운영하던가, 네트워크 자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단체와 조직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운영의 리더십의 확보이다. 네트워크는 피라미드와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민주적이며 횡적인 조직이므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도 이러한 특성 있는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권력이 강조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적이며, 기술과, 지식을 소유한 리더가 선발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 참여한 조직과 개인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네트워크의 본래의 목적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선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는 정보의 공유와 공개이다. 현대 사회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네트워크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편중과 불전개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야기해 네트워크 자체의 움직임과 목적에 장애 및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그리고 과정과 결과에서도 모든 것이 공개되고 공유되는 상황과 조건으로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정리된 요소들의 일부는 협력체계를 끌어가는 동인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일부는 협의조직의 운영 방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요소들은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고려가 협의체를 이끌어가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임에는 분명하다(이현주 외, 2003: 70).

3. 정부부처간 정책적 협력체계 유형

가. 업무협력 합의서

최근 들어 정부부처간 업무협력합의서의 체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부처에서 부처간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면서 직접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인 업무협력 합의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직위와 위상이 비슷한 중앙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조직들 간에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업무협력 합의서의 체결조차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렇듯 부처간 기본적인 업무협력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아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방법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주관부처와 업무협력 합의서의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타 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현황을 보면 대부분 부처간 1:1 업무 협의서를 체결한 수준이다. 따라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 부처들 가운데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유일하게 문화관광부와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나머지 부처들과는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 문화관광부와 타 부처 업무 협력합의서 체결 현황 (2005.12월 기준)

구분	관광자원개발사업 관계 부처	업무협력합의서 체결여부	체결 연월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체결	2005. 10
	농림부	-	-
	농촌진흥청	-	-
	산림청	-	-
	행정자치부	-	-
	환경부	-	-
	정보통신부	체결	2004.10
	과학기술부	체결	2005.04
	법무부	체결	2005.08
	국방부	체결	2005.12

업무협력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문화관광부와 가장 먼저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정보통신부는 2005년 11월 첫 번째 공동 협력사업인 '국제게임전시회(G★2005)'를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4월부터 각 부처 장관을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위원회를 발족시켜 준비를 해왔다. 다른 부처들은 아직 구체적인 공동 사업을 계획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서로간의 업무 협의를 위해서는 상대방 조직의 업무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지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실무자간의 교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업무 협력 합의서에서는 부처간 협력의 방법으로 공동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현장체험 방문, 교육 훈련 프로그램공동 운영을 들고 있으며 정보의 교류, 담당직원의 인사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 타 부처와의 관광관련 주요 합의 내용

관계 부처	관광관련 주요 합의 조항	관광자원개발사업 관련 세부내용
해양수산부	- 협력분야 - 해양관광자원개발 관련 법규의 정비 - 해양관광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해양관광사업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 부처간 교류 및 협력증진	- 어촌 및 어항 관광활성화 협력 - 해양관광기반시설 확충 - 무인도서 관광자원 개발 - 해양 생태 관광 자원개발 - 연안 친수 공간 관광자원화
법무부	- 관광진흥 협력 - 정책협의회 구성 - 부처간 교류 증진	- 관광분야 공동협력 :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고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출입국 절차 등을 개선
국방부	- 관광진흥 협력 - 정책협의회 구성 - 부처간 교류 증진	- 한국관광의 매력도 제고 등 - 관광진흥을 위하여 생태·안보 - 관광활성화, 병영체험 등 안보관광프로그램 발굴 등에 협력

나. 단독 협의체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전제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독립적 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때문에 해당 부처들로만 구성된 단독협의체는 해당부서 최고 책임자인 장관들이 국무회의나 양부처의 회의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관련된 논의를 유도하고 이해시키며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전념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 부처의 장관 및 차관을 통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목표가 대변됨으로써 정책수단을 강화할 수 있고 일선 집행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지니고 있는 채널을 통해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부서끼리만 협의체를 구성하면 논의의 범위와 대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적극적·진행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양 기관끼리 단독협의체를 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능중심의 정부조직 편제 하에서 관광자원개발이라는 대상을 구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능을 관장하고 있는 여타 부처에 대한 정체성 구별이 어렵고, 아울러 기능상의 협조와 조정이 불확실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기관의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공동협의체가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다. 공동 협의체

공동 협의체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협의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협의체내에서 모든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주요한 심의 및 의결사항들이 결정되는 형태의 협력체계로서 가장 지향해야 할 협력체계 구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장점을 가지게 된다.

첫째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 단독 협의체의 경우는 양부처 상호간의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만 이루어질 가능성인 높으므로 관광자원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 어렵고 독선적 결정이 되기 쉬우나, 공동 협의체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논의와 그에 따른 합의하에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민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채택될 수

있다.

둘째는 정책수립 및 평가의 용이성이다. 공동 협의체의 경우 다수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합의하에 정책을 수립·평가하게 되므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정책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하다.

셋째는 행정의 안정성 및 독립성이다. 한사람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는 다수인에 의한 권한의 분점이 오히려 조직의 장기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고 외부로부터 정치적 압력에도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넷째는 사업 기능의 중복성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유사한 기능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고 조직의 과잉과 중복을 줄이며 행정 책임을 명백히 하는 데 있어 공동 협의체는 단독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다.

다섯째는 정책 비용의 절감 가능성이다. 정책비용은 정책의 수립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과 정책의 효과에 의한 외부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민원발생 등 외부비용 측면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공동 협의체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 협의체라고 해서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다수인이 참여한 결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결정이 지연되거나 결론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단독 협의체 보다는 결정 비용(인건비와 시간적 요인 등)이 일반적으로 증가되며 공동협의체 조직의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가급적 다른 구성원들의 결정 안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향을 띄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조직 내 소신 있고 창의적인 소수의 성장을 일반적인 다수가 가로막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타협적 결정을 막기 위해서는 비밀투표에 의한 결정을 하는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복합적, 포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독협의체 보다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동 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완벽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부 위원회들 중에서는 몇 년 동안 회의 한번 열지 않은 위원회도 적지 않고 일년에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서류 위원회들도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다.

자기 부처 산하에 위원회를 다수 보유하는 것이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뚜렷한 종결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즉 행정상의 문제로 상급부처에서 별도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각 업무가 다르고 관광분야에 대한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각 사업을 해당 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한 사업을 부처별로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공동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분석

가.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 실무협의회

1) 배경 및 개요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만들어진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 실무협의회는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요사항을 협의하여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의 역할, 공동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각 사업의 추진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이라 함은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산림청의 산촌개발사업(산촌체험마을사업의 경우에 한함)을 대상으로 한다(농림부, 2004: 1).

2) 협의체 조직과 협력내용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실무협의회는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담당하고 관계부처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농림부의 농촌진흥과장, 행정자치부의 지역균형발전과장,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과장, 농촌진흥청의 농촌생활자원과장, 산림청의 경영지원과장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농림부 농촌진흥과장이 담당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부처의 담당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표 2-3>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되는 사항

구분	내용
협의 사항	각 부처별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공동기획·조정을 통한 사업간 연계방안 사항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력양성, 홍보 등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통합, 전문화 등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부처에서 요청하는 사항

관계부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합의된 결과를 개별사업의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개별사업의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만 대상지 선정할 때 유사 사업간 중복지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사업간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 관련 사업과 농산어촌체험관광관련사업은 중복지정 가능하다(농림부, 2004: 3). 또한 실무협의회는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개선안, 각 부처별 사업간 연계방안, 중장기적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3) 추진현황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협의회에서는 각 관련 부처들이 연 1회 이상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마을과 주변 환경의 일반특성 및 자원, 1사1촌 자매결연 등 도시민과의 교류, 관련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홍보 및 마케팅 분야, 제도적 개선사항 등이다.

2005년에는 8.31~9.2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 부안군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대상마을은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남당마을(2005년, 녹색농

촌체험마을), 기산면 화산리 이색체험마을(2004년, 전통테마마을), 마서면 송석리 송석마을(2001년, 어촌체험마을), 마서면 합전리 꿈마을(2001년 아름마을, 2003년, 정보화마을), 판교 심동(2003, 산촌개발사업), 군산시 성산면 갯치멀마을(2004년, 정보화마을),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우신마을(20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진서면 서포리 입암마을(2002년, 전통테마마을), 변산면 도청리 모항마을 (2004년, 어촌체험마을)이다(농림부, 2004; 농림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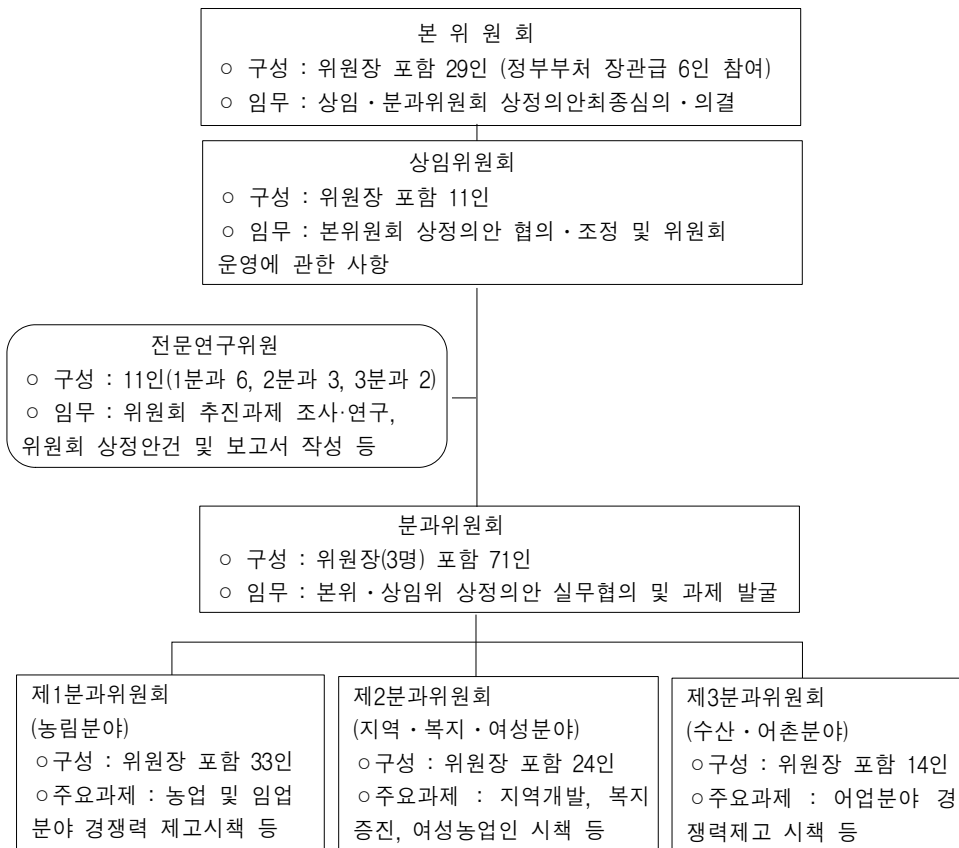
나.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1) 배경과 개요

2001년 11월 카타르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채택됨에 따라 관세 및 보조금의 추가감축 등 시장개방 확대가 전망되었고 국내적으로도 쌀을 비롯한 농산물 소비의 감소 및 가격하락과 도·농간 소득격차확대, 교육 등 농촌복지여건의 미흡 등 농어촌의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업 시대를 열어나갈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국민적·범정부적 성격을 지닌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난 1994년 UR 타결직후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를 통해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한 경험과, 「선협상·후대책」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교훈삼아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장관, 농어업인·소비자대표, 전문가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뉴라운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농어업 여건을 감안한 중장기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목표이며 당초 2004년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되었으나, 2004년 12월 법 개정으로 2007년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되었다.

2) 협의체 조직과 협력내용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범정부적이며 민간위원들도 대거 참여하는 광범위한 조직으로 본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도 2005년을 기준으로 11.9억에 이른다.



[그림 2-1]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 조직도

그 외에 별도 조직으로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등에 지역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구성은 도(시) 농정국장(또는 농림수산국장), 도(시) 정책기획관, 도(시) 농업기술원장, 농어업인단체 대표 및 선도 농어업인 4~8인, 소비자단체 대표 2~4인, 학계, 연구기관, 언론기관 전문가 2~4인 등 1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별로 논의하는 내용도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이다.

<표 2-4> 위원회 협의 사항

구분	내용
본위원회 협의 사항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그 밖의 농어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어촌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관한 사항
지역위원회 협의사항	지역의 농어업·농어촌 발전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기타 농어촌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어촌 관련 광역자치 단체의 장이 요청한 사항
	지역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한 사항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3) 추진현황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본위원회 14회, 분과위원회 66회 등 총 420회 회의를 개최하고 12회(주요현안보고 6, 국정과제보고 6)의 대통령 보고를 실시했다. 세부 내용으로 2002년에는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역점을 두고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 120개 세부과제(농업·농어촌 70, 수산 50)를 선정·협의하였다. 2003년에는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토대로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였다. 2004년에는 종합대책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의 합의를 도출하여 쌀·DDA 협상협의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쌀 협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쌀 관세화유예연장 방향을 제시하여 갈등 최소화하였다. 또 논란이 많았던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농민단체의 숙원인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제시하였다.

2. 국외 사례 분석

국외 사례인 영국과 프랑스는 EU라는 큰 틀의 구성원임으로 각국의 국내정책과 EU 정책들 간의 연계성이 많고 회원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정책들은 EU의 공동 농업정책(CAP) 범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국의 자체예산과 EU의 예산이 결합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EU 각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정책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추진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EU의 각국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기구나 제도 등이 각국마다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전통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정책연구단, 2002: 17~18).

가. 프랑스

1) 배경 및 개요

프랑스는 제1차 경제5개년 계획에 의하여 2차대전 중에 황폐해 진 농촌부의 소규모 호텔의 부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1949년에 「로지-드-프랑스」라는 이름의 전국 네트워크 조직(비영리단체)이 설립되었다. 1952년에는 알프-드-오토프로방스 주 의원의 제창에 의해 임대별장형 민박(지트-류탈)이 탄생하였고 1955년에는 값싼 요금으로 장기휴가를 지낼 수 있는 임대별장형 민박(지트-류탈)의 경영자들이 지트-류탈-드-프랑스라는 비영리 네트워크 조직을 설립하였다. 이것이 유럽 최대의 민박 네트워크가 된 지트-드-프랑스 전국연맹이며 지트-류탈-드-프랑스는 제2차 경제5개년계획에서 농촌부의 주거 수리 복원을 추진, 장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 농림부는 1955년부터 농가의 부수입 기회 제공, 인구 유출로 인한 농촌의 빈집 활용, 농촌의 향토자산인 민가를 보존하여 도시주민이 농촌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농가가 민박을 경영하는 것을 장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했다(임상봉, 2004).

2) 협의체 조직과 협력내용

프랑스는 농림부, 환경부, 관광부, 국토개발청(DATAR) 등 관련부처 간 협의기구('94. 6월 창설된 농촌개발 및 정비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 : CIDAR MEUSE/Comité Interministériel de Développement et d'Aménagement Rural)를 통해 농촌관광 개발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개발 관련시책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는 농촌관광 관련 단체와 농림부, 국토정비청, 관광부, 환경부 등이 주축이 돼 농촌관광 개발을 위한 '농촌관광 상설회의(conférence permanente du tourisme rural)'라는 상설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2001년 5월 이후 활동에 들어가 농촌관광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 협의체는 농촌관광에 관한 국가차원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부처의 관련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표 2-5> 프랑스 농촌관광 상설회의의 조직

구분	내용
명칭	농림부, 환경부, 관광부 간의 '농촌관광 상설협의체(CPTR)'
기능	농촌관광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취합하며, 농촌관광에 관한 국가정책의 수립에 기여 할 수 있는 필요한 제안활동을 수행함. 농촌관광 관련단체들 간의 상호의견 교환
구 성 (46명)	- 5명의 지방의회 의원 - 농촌관광 소비자 단체 대표 1명 - 농촌관광자원센터(CNRTER) 대표 1명 - 국립 관광관측소(ONT) 대표 - 프랑스 관광엔지니어 대표(AFIT) 1명 - 농업회의소 및 상공회의소 중앙회 대표 3명 - 농림부, 환경부, 관광부들 대표자 6명 - 관련분야 전문가 9명 - 농촌관광분야 기업대표 1명 - 농촌관광분야 종사 직능대표 3명
회장	위원회에서 3년 단임으로 선출, 3명의 부대표
사무국장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은 환경부와 관광부가 담당하는 행정비서를 둠. 행정비서는 회장과 부회장에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CPTR의 내부규정을 마련
위원의 임명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부처간 법령으로 임명, 임기 3년, 재임용가능

자료 : 정책연구단(2002), 선진농촌관광발전 사례연구(영국, 프랑스)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재구성

3) 추진현황

프랑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촌관광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가 주로 농업경영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농촌관광과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며, 지역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정비청은 국가지역개발계약 차원에서 각 지역의 관광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하드웨어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관광부는 CPER 계획 차원에서 농촌관광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관련 민간협회를 통해 농촌지역의 관광자원 조직화와 상품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아름다운 마을 계획’ 등 농촌 어메니티 자원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임상봉, 2004).

나. 영국

1) 배경 및 개요

농촌관광의 한 형태인 농가 민박사업은 1960년대 당시 농산물 과잉으로 농가 소득이 줄게 되자 일부 농가에서 경영 다각화의 일환으로 구체화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농촌관광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도시민들의 여가수요를 흡수하는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었고 1983년 정부 지원에 의하여 농가휴가협회(Farm Holiday Bureau)가 설립되면서 자리를 잡았다. 영국 농촌관광 정책은 EU정책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공동농업정책(CAP)이 담당하는 농업부문과 지역정책이 포괄하는 비농업적 지역발전의 두 가지정책으로 나누어져 있던 단계로 공동농업정책이 농업활동의 지원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촌관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농민 혹은 비농민에 상관없이 지역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2단계는 구조기금의 개혁을 통해서 EU의 각 지역이 5개의 목표 지역으로 구분되고 각 특성에 따라서 EU의 세 가지 구조기금(ERDF, ESF and EAGGF Guidance Section)이 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구조기금 개혁을 통해서 각 회원국가가 농업정책을 통해서 농민의 다각적인 활동(비농업활동 포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영국에서도 1988년 농장다각화사업 지원대책(Farm Diversification Grant) 또는 목표 5b정책(Objective 5b policy)에 따른 농촌발전정책

의 일환으로 농장다각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농업 부문 예산을 통한 농장관광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었다. 2000년까지 시행된 이러한 정책은 농가, 비농가에 대한 지원이 산업 부문별로 분리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리된 정책 예산의 지원체계는 통합적인 지역발전의 추진을 지원하는데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Agenda 2000 개혁에서 대폭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

3단계에는 Agenda 2000 개혁에 의해 각 회원국들은 통합적인 농촌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은 기존의 농촌발전 관련 조치들을 통합해서 지역별로 수행하는 농촌발전 프로그램(ERDP)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기존에 농촌관광 사업에 대해 별도로 지원되던 것이 '농촌기업지원대책 (Rural Enterprises Scheme)'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정책으로 '직업훈련대책(Vocational Training Scheme)'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기업지원대책은 DEFRA에서 농촌발전 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실시될 개별 사업들을 통칭하는 것에 불과하고 각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사무소, 지방 정부, 정부관련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해서 다양한 형태의 농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농장관광업, 농촌관광업, 식품 등 기타제조업, 운송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임상봉, 2004).

2) 협의체 조직과 협력내용

영국은 기존의 영국관광위원회(ETC: English Tourist Council)의 기능을 2003년에 흡수 통합한 영국관광사무국(BTA: British Tourist Authority)이라는 정부산하 기구를 통해 농촌관광을 포함한 전체 관광부문에 대한 공공적 개입을 하고 있다. BTA는 영국 전역에 걸쳐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관광 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관광 관련 인적자원 개발, 해외 수요층에 대한 영국 관광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임상봉, 2004).

3) 추진현황

영국관광사무국(BTA)은 첫째, 관광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를 위해서 주기적인 소비자 수요 패턴 조사를 실시, 축적된 연구결과나 정보들을 관광 부문 민간단체나 기업들에 전파해 관광 마케팅 활동을 지원,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체계를 구축하

여 국민 대중들에게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 영국내각의 유관부처(환경식품농촌부, 문화매체체육부 등)에 정책자문과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관광 품질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숙박시설, 관광매력물, 관광지 등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캠핑장, 호텔, 농촌민박, 유스호스텔 등 2만 2,000여 개에 달하는 영국 내 거의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품질등급을 관리하고 있다. 관광부문 인간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자체적으로 'Welcome Host'라는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 민간부문 조직에 아웃소싱 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Institute of Tourist Guiding'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의 표준화된 기준을 토대로 관광부문 인력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대한 영국 관광 홍보 분야에서는 다양한 민간 부문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영국에서는 정부산하 기구인 영국관광사무국(BTA: British Tourist Authority) 외에도 각 농촌지역의 민간 농촌관광 경영체들이 연대한 여러 농촌관광 브랜드 네트워크들이 있어 경영체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 마케팅 지원,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정책연구단, 2002).

다. 일본

1) 배경 및 개요

일본정부는 일본의 경제·사회를 비롯하여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1999년 7월 16일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식료·농업·농촌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념과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농정의 '기본이념'을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 다면적 기능의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농촌의 진흥 등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수립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검토'에서 식량공급의 위기 수준을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 3단계로 분류하고 위기 수준이 레벨 2로 높아질 경우 기존의 골프장이나 유흥공터 등을 즉시 농지화 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했다.

2) 협의체 조직과 협력내용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농림수산성(제39조)에 식료·농업·농촌 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심의회는 위원 15명 이내로 조직하며 위원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하여 학식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농림수산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리가 임명한다. 그 외 심의회의 직원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는, 농림수산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리가 임명한다.

심의회는 법률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총리·농림수산장관 또는 관계 부처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법률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 할 수 있다. 또 앞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총리, 농림수산장관 또는 관계 부처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심의회는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견 개선,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식료·농업·농촌기본법, 1999).

3) 추진현황

농림수산성은 2002년 '구조개선국'을 '농촌진흥국'으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하였고,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여 그린 투어리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성 구조개선국 및 대신관방(大臣官房, 기획실)과 국토청의 지방진흥국 기능을 합쳐 국토종합개발과 농산어촌 종합대책 수립기능을 보강하였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共生·對流)」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食과 農의 재생계획 (2002. 4)』의 3대 과제 중 하나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쌍방향에서 오고가는 라이프스타일 실현을 들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농산어촌은 매력 있는 유인책 확보, 도시는 농촌을 지원하는 등 상호교류
-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과 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③ 공생·대류의 추진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성을 중심으로 정부 7개 부처(총무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환경성, 행정노동성, 경제산업성 등)가 협조하여 그린투어리즘 확대보급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신(新)그린투어리즘 종합추진대책」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4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2-6> 신(新)그린투어리즘 종합추진대책』의 4대전략

유형 구분	내용
요구 실현 전략	공생·대류의 국민운동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의 새로운 스타일 제안·보급
정보화전략	농산어촌 정보제공의 거점이 되는 그린투어리즘 센터 기능의 확립
산업화 전략	그린투어리즘 비즈니스 (교류·체험서비스)의 육성
지역단위전략	농산어촌의 매력향상을 위한 지역의 자발적인 추진지원

이 대책의 시행 기간은 2003~2005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시행 주체는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협동조합, (재)도시농산어촌교류 활성화 기구 등이며, 정부 보조율은 1/2 이내이다. 한편, 2001년 4월에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를 설치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기구는 (재)농림어업체험협회, (재)고향정보센터, (재)21세기 마을만들기숙(塾)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들어졌는데, 그린투어리즘을 기획하고, 농촌민박 등록업무, 도시인에 대한 정보제공,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경영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임상봉, 2004).

제3절 시사점

1. 조직 부분

가. 각종 계획과 정책들의 통합

영국은 환경·농업·농촌부(DEFRA) 이외에 다양한 부처에서 관광관련 정책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목적사업과 조건불리 지역지원사업과 같이 사업대상지역을 정하고 있더라도 광역적 대상지역을 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지방은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정책프로그램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계획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계획과 각종 정책프로그램들이 통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농림성을 비롯한 다양한 부처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정촌 단위의 농촌계획의 근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농촌진흥기본계획」에 지역과 주민주도의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이 필요한 계획수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성이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시정촌의 계획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이 계획의 틀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에서도 이른바 「시책제휴」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영국과 일본은 계획수립권한을 관 주도, 중앙정부 주도에서 주민 참여, 지역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지역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 계획 수립을 세워 정부의 각종 정책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이재준 외, 2004). 프랑스는 관광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농림부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농가의 농촌 민박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국토정비청은 각 농촌 지역의 관광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광부는 관광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환경부는 “아름다운 마을계획” 등 농촌 어메니티 자원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부터 농촌관광과 관련된 정부부처간 상설협의체(CIDAR)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개발 관련 시책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역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동으로 심사평가하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 협의회를 조직하고 여러 농어촌문제에 대해 범정

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관광 전문조직 운영

영국의 BTA(British Tourist Authority), 프랑스의 '지트(Gtes)'¹⁾, 일본의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등은 정보관리, 교육, 홍보, 품질관리 등을 통하여 관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조직이다.

영국관광사무국(BTA)은 지역관광에 대한 수요분석에서부터 공급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할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시설과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RAC(Royal Automobile Club), AA(Automobile Association)와 같은 민간조직이 자발적으로 수행해 오던 등급화 업무를 BTA가 개입하여 민간과 공통된 등급화 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이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 지트의 경우 본부에서는 관광부분을 특화하여 이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광고 활동, 안내서 발행, 민박 예약 시스템 운영, 민박경영자 육성뿐만 아니라 민박의 등급을 매기거나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일본은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촉진(제36조)을 명시하고 2001년에는 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를 발족시켰다. 이 기구를 통해 지역관광에 대한 홍보 및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2001년에 새로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도시·농촌 교류를 농촌진흥정책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하여 그린투어리즘과 도시·농촌교류의 전국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2001년에 기존의 농림어업체험협회, 고향정보센터, 21세기 마을만들기숙(塾)을 통합하는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를 구성하고 도시주민의 자연·고향·지향과 그에 대응한 풍요로운 마을을 가꾸려는 농촌의 뜨거운 열의를 연결시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최동주, 2003). 우리나라에 관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없고 도농교류센터 등의 역할과 위상이 낮은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1) 마을에 있는 농가를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대표적인 민박조직으로, 전국적으로 대가 민박 3만 7000채와 기타 민박 약 1만 3600실이 가입되어 있다.

2. 내용 부분

가. 공급에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려는 시도

영국은 농지이용을 농업 외에 환경 및 문화적 측면과 연계하여 농촌의 어머니 터 자원의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수요와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이용을 달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설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농촌의 환경도 보전하고 어머니 터 자원을 개발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직업훈련사업 등을 통해 다른 사업 경영체와 함께 농촌관광 경영자에 대해서도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진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농림수산성에서 농촌관광을 도농교류의 관점에서 강조하며 조사·연구를 지원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일본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도농교류 및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위와 같이 외국 여러 나라들은 환경보전과 경관개선을 위한 토지이용 조정에서부터 관광기반시설 설치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광 서비스 향상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력은 수요자, 즉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려는 시도이다.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 협의회가 부처들의 합동점검을 통해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홍보 및 마케팅 분야 등을 관리하는 것도 관광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내용들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관광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

영국은 용도지구를 설정하여 그 곳의 환경과 경관을 정비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BTA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민간 자원에 의한 등급화 등 품질관리를 조정하며 등급화 및 품질관리와 관광 안내 등을 지원한다. 프랑스의 지트와 같이 민간조직으로서 등급화 업무 외에 예약 서비스까지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도시·농촌 교류라는 용어를 법에 명시하고서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선에서부터 규제개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관광의 활성화와 도농교류를 강조하는 국가의 경우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촌관광을 안내·홍보하며, 시설과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처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적 뒷받침을 토대로 토지이용 조정에서부터 시설정비와 소프트웨어 개선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경우 등은 우리나라의 관광육성정책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각 부처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체험마을, 테마마을 등)하고 있지만 관광자원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중이다. 이제 관광자원개발사업은 한 부처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며 모든 정부 조직이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떠올랐으며 그 중요성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다. 네트워크의 강화

지역과 정부부처들의 네트워크 체계가 조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연관조직들간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각 지역에 해당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위원회와 협력추진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산하 기구인 영국관광사무국(BTA)외에도 각 농촌지역의 민간 농촌관광 경영체들이 연대한 여러 농촌관광 브랜드 네트워크들이 있어 경영체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 마케팅 지원,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는 임대별장형 민박(지트-류랄)의 경영자들이 지트-류랄-드-프랑스라는 비영리 네트워크 조직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유럽 최대의 민박 네트워크가 된 지트-드-프랑스 전국연맹이다. 이 네트워크 조직은 상호의견 교환은 물론 서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3장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분석

제1절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 구분

1.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현황

현재 대부분의 부처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부서별로 유형의 구분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들로 구분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 정부부처별 지역단위 개발사업 현황

주무부처	사업 수	사업명	유형
농림부	6	녹색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확대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초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 용수공급사업	기초생활환경개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초생활환경개선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
		정주권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
농촌진흥청	3	농촌전통테마마을	도농교류 확대
		농가부엌·목욕실·화장실 개선사업	기초생활환경개선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사업	기초생활환경개선
산림청	4	산촌종합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도농교류 확대
해양수산부	3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역개발
		어촌체험마을사업	도농교류 확대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	도농교류 확대

<표 계속>

주무부처	사업 수	사업명	성격
행정 자치부	11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도농교류 확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도농교류 확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기초생활환경개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기초생활환경개선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기초생활환경개선
		소하천정비	기초생활환경개선
		농어촌마을다목적 광장조성사업	기초생활환경개선
		소도읍종합 육성계획	지역종합개발
		오지종합개발사업	기초생활환경개선
		도서종합개발사업	기초생활환경개선
		접경지역 지원사업	지역종합개발
환경부	4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사업	자연환경보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기초생활환경개선
		면단위하수도 정비	기초생활환경개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초생활환경개선
문화관광부	3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도농교류 확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도농교류 확대
		청소년수련마을지원사업	도농교류 확대
건설교통부	2	수도정비기본계획	기초생활환경개선
		오지교통지원사업	기초생활환경개선
재정경제부	1	지역특화발전계획 특구	도농교류 확대
중소기업청	1	향토 산업 기본계획	도농교류 확대
10개 부처	38개	-	

2.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

앞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역단위 개발사업들이 모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이란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하여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또는 해당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개발사업을 할 수 있거나 관광자원화 하여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창출과 관광자원 공급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고 정의한다.

<표 3-2> 각 부처별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칭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산림청	산촌개발사업,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사업
총 6개 부처	10개 사업

제2절 정부부처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1. 농림부 사업

가. 녹색농촌체험마을

1)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농림부가 추진 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사업 내용은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 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지원, 컨설팅·설계비, 교육훈련·홍보비등 구분된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생활편의시설에는 마을안길, 마을안내판(석), 표지판, 상하수도, 오물처리시설, 급수대, 인터넷공동이용시설, 마을 홈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 벤치·정자, 가로등, 공동화장실·공동샤워실·공동취사장 등이 있다. 농촌체험기반시설내용으로는 체험농장·체험목장 조성(농장·목장에 원두막·관찰코스 등 체험시설조성), 주차장, 캠핑장, 산책로, 낚시터 등 주변여가시설, 잔디축구장, 소규모체육시설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 어린이놀이터, 기존 마을회관·창고·축사·폐교시설을 단체 숙소나 체육·문화공간으로 개조, 축대, 안전시설·장비 및 장애인·노인용 편의시설·장비 등이 있다. 마을경관 조성에는 화단·꽃밭가꾸기, 마을진입로 나무심기, 꽃길, 잔디광장조성, 다리 보수, 토담·돌담조성, 전통지붕 조성, 전통건축물·유적지 보수, 빈집 정비가 있다. 컨설팅·설계에는 사업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문가 자원조사 및 컨설팅비용(10백만원까지),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등이, 교육훈련·홍보에는 주민 교육훈련 및 팸플렛 제작 등이 있다. 농업생산기반을 포함한 농업용 시설, 농산물 판매나 가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농사 체험을 위한 체험관찰코스 등 부대시설 설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농·특산물 공동판매코너 인테리어 비용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1년이 기본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2년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이 2년이 될 경우 1억 원씩 연차별 지원한다.

<표 3-3> 녹색농촌체험마을 개요

구분	내용
주무부처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사업 계획기간	2002년 ~2013년
전체 사업량	총 805개 마을
단위 사업기간	1년
사업비	1개 마을당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2) 추진현황

2002년부터 시작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여러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2년에 18개였던 사업량은 2005년에 47개로 늘어났으며 2013년까지 727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표 3-4> 연도별 사업량과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2013
사업량(마을)		805	18	26	32	47	727
사업비	계	170,000	3,600	5,200	6,400	9,400	145,400
	보조	85,000	1,800	2,600	3,200	4,700	72,700
	지방비	85,000	1,800	2,600	3,200	4,700	72,700

자료 : 농림부 외(2005),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p 8

2. 농촌진흥청 사업

가. 농촌전통테마마을

1)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농촌진흥청이 시행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은 농촌이 전통문화, 자연환경, 농산물 생산 등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새로운 인식과 함께 농촌의 가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해 농업인들의 인식과 관리 능력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해결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유한 농촌전통문화를 발굴·보존하여 체험·학습,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교류에 기여하는 농촌마을 조성이 이 사업의 목적이며 마을별 테마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다운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어메니티를 보전 및 활용하는 것이 방향이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전체 20호 이상인 마을로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 마을 협정에 참여해야 하고 전통문화자원이 있거나 개발 가능한 자원으로 차별화와 특화가 가능한 마을, 친환경농업 추진 의지가 있는 마을, 농촌다운 경관과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도 대상이 된다.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사업부분에서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 숙박 및 편의시설 정비이며 교육사업은 주민 및 리더 교육,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이다. 전문가 컨설팅 부분에서는 테마발굴,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시범 실시가 있으며 상품개발부분에서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농특산물 생산·수확·가공 및 판매시설 설치, 지역문화체험시설 설치, 기자재 확보 등이 있다.

<표 3-5> 농촌전통테마마을 개요

구분	내용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
사업 계획기간	2002년~2010년
사업량	총 160개 마을(시·군당 1개소씩)
단위 사업기간	2년(1차년도 1억, 2차년도 1억)
사업비	2억(국비 50%, 지방비 50%)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제 1항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2) 추진현황

2002년 9개 마을에 9억원(마을당 1억원)이, 2003년에는 27개 마을(기존 9개 마을과 신규 18개 마을)에 27억원이 지원되었다. 2004년에는 전년 지정된 18개 마을과 신규 18개를 합한 36개 마을에 36억원을 지원했다. 2005년에는 기존 18개 마을과 신규 지정된 21개 마을에 약 40억을 지원하고 있다.

<표 3-6> 연도별 사업량과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사업량		9개소	18개소	18개소	21개소	94개소
사 업 비	계	900	2,700	3,600	4,000	24,800
	보 조	450	1,350	1,800	2,000	12,400
	지 방 비	450	1,350	1,800	2,000	12,400

자료 : 농림부(2004a), 농촌전통테마마을 시행지침

3. 산림청 사업

가. 산촌종합개발사업

1)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지역특산자원 발굴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촌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산촌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산촌개발역량 함양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도시·산촌 교류를 촉진해 산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10개 분석사업 중 유일한 지역단위 사업이며 시행기간도 길고 내용도 여러 번 변경되었다. 1996년 22.4억이었던 지원규모는 14억으로 조정되었고 사업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2002년에는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다. 보조금액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고, 융자금액은 4억에서 2억으로 축소되었다. 2005년에는 사업비가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되어 산림청에서 시·도로 배정했던 것이 각 시·도별 예산확보로 바뀌었고 산촌개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표 3-7> 산촌종합개발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무부처	산림청 (산림자원국 경영지원과)
사업 계획기간	1995년 ~ 2007년
사업량	총 193개 마을
단위 사업기간	2년(2002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사업비	14억(국비 70%, 지방비 30%)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2) 추진현황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 실시 후 평가를 실시하는데 2005년에는 2003년에 완료된 34개 마을을 상반기에, 2004년에 완료된 15개 마을을 하반기에 평가했다. 1차 평가(내부평가)에는 조성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차 평가(외부평가)에는 평가반의 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를 한다.

<표 3-8> 연도별 사업량과 진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전 설계량)	진행현황	사업비		
			총액	사전설계	마을조성
1995	4	완료	2,549	309	2,240
1996	5	완료	7,118	398	6,720
1997	16	완료	12,080	880	11,200
1998	22	완료	8,762	1,295	7,467
1999	12	완료	18,660	740	17,920
2000	17	2003년 완료	24,961	1,067	23,894
2001	17	2003년 완료	25,707	1,067	24,640
2002	15	2004년 완료	26,374	914	25,433
2003	10	2년차 사업진행 중	28,960	627	28,333
2004	20	1년차 사업진행 중	-	-	-
2005	15	사전설계 중	20,364	945	19,419

주 : 마을당 조성비는 국고 490,000천원, 지방비 210,000천원이며 설계비는 62,720천원임

자료 : 장우환 외(2002), 산촌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1)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근대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전통마을 숲이 파괴되어 왔고, 농산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로 전통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촌의 경관 중 가장 친밀성을 갖고 있는 전통마을 숲을 복원하고 유지하여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킬 필요성이 생겨났다. 산림청에서는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는 전통 숲을 대상으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현대적인 수요에 맞게 정비하여 농산촌에 대한 활력을 도모하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은 시민단체인 ‘생명의 숲’이 담당을 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목식재 및 가꾸기, 벤치, 평상, 파고라 및 급수 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 수목치료 및 병해충예방을 위한 병해충방제 및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 나무주사 등과 안내판, 철책, 지주대, 전통 숲의 유래 역사 등에 관한 홍보판 등의 시설들이 있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술자문 등도 포함된다.

<표 3-9>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무부처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휴양정책과, 시행은 생명의 숲)
사업 계획기간	2003년~2012년
사업량	110개
단위 사업기간	1년 미만(불가피한 경우 기한 연장)
사업비	마을당 8천만원
근거법령	-

2) 추진현황

2003년 1개소 당 5천만원이었던 지원금액은 2004년부터 8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뿐만 아니라 전통마을 숲 문화 행사도 지원(3백만원)하고 있다. 2004년에는 26곳이 응모하여 10곳이 선정되었고 2005년에는 25곳이 응모하여 18개 지역이 서류 심사를 통과했고 현지심사를 거쳐 신규 9곳과 후속지역 2곳을 선정되었다.

다.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농산촌에 마을 숲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관광과 연계한 소득증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복지마을을 시범 조성하여 마을 숲을 통해 우리 국민의 정체성 회복하고 마을경관 복원으로 농산촌 주민의 자긍심 고취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배경이다. 또한 조성된 숲을 방문객에게는 농산촌 체류시 휴양공간을 농산촌 주민에게는 휴식 공간 제공하고 도시와 농산촌간 교류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식재를 하는 것이 주를 이루어 마을 진입로에는 느티나무·은행나무·이팝나무·팽나무 등 마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수목 식재하고 마을 안길에는 무궁화·산수유·동백 등 꽃나무로 꽃길을 조성한다. 마을 공한지에는 건물과 어울리는 장수목, 소나무, 유실수 등 마을 주민들이 숲과 그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나무 심고 마을주변 유휴 토지에는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등 유실수를, 마을주변과 인접한 산림 유실수, 용재생산 수종을 심는다.

<표 3-10>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개요표

구분	내용
주무부처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사업 계획기간	2003년 ~
사업량	시범설계 4곳 후 18개 마을
단위 사업기간	1년 미만
사업비	1개 마을당 7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
근거법령	-

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최근의 인구 증가 및 고도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는 도시 내의 숲, 물 등과 같은 원시적 자연 요소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공해로부터 벗어나 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녹지 효용의 상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야외 휴양 자원으로서 최적 환경을 갖춘 산림지역에 대한 국민의 보건, 휴양적 요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을 효시로 20개소의 국립공원, 22개소의 도립공원, 29개소의 군립공원과 더불어 많은 휴양 관광 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들의 산림 휴양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1988년에 자연휴양림 사업을 도입하여 국민의 휴양 수요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 국가, 지자체,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 신규조성 내용으로는 부지조성, 진입로 공사, 등산로시설, 매표소, 정자조성, 화장실 및 쉼스,테크 설치, 운동장, 물놀이장 설치 등이며 계속사업의 내용은 관리사 신축, 숲속의 집 조성, 야영테크, 상수도 및 소각로 설치, 숲속교실 운영, 안내판 설치 등이 있다.

<표 3-11>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무부처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휴양정책과)
사업 계획기간	1988년 ~ 2007년
사업량	총 140여개
단위 사업기간	설계 1년, 시공 3년
사업비	해당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름
근거법령	산림법

2) 추진현황

자연휴양림은 1988년도에 유명산 자연휴양림 등 3개소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92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까지 총 14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다채롭고 수준 높은 휴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및 가족 휴양공간으로 거듭 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연휴양림의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 29개소, 공유림 47개소, 사유림이 16개소 등 92개소 117,482ha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문화관광부, 2005).

4. 해양수산부 사업

가. 어촌체험마을 사업

1)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는 어업 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 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도지사는 선정된 마을의 시설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관광분야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해야 한다.

<표 3-1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사업 계획기간	2002년 ~ 2009년
사업량	총 103개 마을
단위 사업기간	1년
사업비	5억(국비 50%, 지방비 45%, 자부담 5%)
근거법령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28조 , 농어촌 정비법 제 89조

사업집행주체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대상사업 중 어촌계 시행사업의 사업자를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선정해야 하며 시·군·구의 수산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및 협의체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시 가능한 관광전문가를 포함하여 어촌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 내용으로 관광기초기반시설에는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가로등, 샤워장, 화장실 등이 있고 비용은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진입로 확·포장 등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등으로 사용된다.

2) 추진현황

어촌체험마을 사업은 선진어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어항에 관광기능을 합친 다기능종합어항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어촌 체류형관광(블루 투어리즘) 추진거점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다. 사업의 집행주체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표 3-13> 연도별 사업량과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사업량(개소)		8	11	12	17	55
사업비	계	4,000	5,500	6,000	11,000	25,000
	보 조	2,000	2,750	3,000	5,500	12,500
	지방비	1,800	2,475	2,700	4,950	11,250
	자부담	200	275	300	550	1,250

자료 : 농림부외(2004),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5. 행정자치부 사업

가.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1)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과거의 농촌은 농어민이 거주하면서 식량을 생산하는 단일적인 기능만을 수행했으나 지금의 농촌은 식량생산 공간 외에 국토의 보존유지와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쾌적한 생활제공 공간, 전 국민의 여가·휴양 공간 등으로 기능과 역할이 다변화되고 있다. 최근의 개발방식은 관 주도의 획일적인 개발에서 주민자율의 특성화차별화 개발로, 다수마을의 소규모 분산지원에서 거점마을 중심의 집중지원으로, 타율과 임의에 의한 지원에서 자율과 경쟁의 선택적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생태 및 청정환경 전통문화의 계승 등 농어촌의 강점과 고유테마가 살아있는 21세기 새농촌마을 가꾸기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개발 잠재력이 높고 고유전통이 살아 있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잘 보전된 자연환경·고유전통 등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테마마을로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민박마을 조성, 특산품 개발, 직판로 개설 등을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원을 발굴하고 도시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3-14>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사업 계획기간	2001년~2004년
사업량	23개 (광역시별 1개, 도별 2개 마을씩 추진)
단위 사업기간	1년
사업비	15~20억 (특별교부세 10억 포함)
근거법령	-

분야별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정비, 관광상품 개발, 소득원 개발, 판매망 구축 등이 있다. 마을실정에 따라 테마사업을 선정·추진 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정비에는 오솔길 조성, 소하천 정비, 마을 하수도 설치,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나눔의 집 건립, 주민공동광장 등 쉼터 조성, 농촌빈집 등 환경저해 시설정비 등이 있다. 관광상품 개발 내용에는 영화와 소설속의 배경지 정비, 모험놀이동산 조성, 아름다운 마을 콘테스트, 농촌마을 야외음악회·연극제 등 개최지원, 전래놀이문화의 개발 및 상품화 등이 있고 소득원 개발내용에는 마을상징 캐릭터 개발, 농작물 생산기반 확충 판매망 구축에는 1사·1단지·1촌 운동 전개 등이 있다.

2) 추진현황

전통농촌형, 생태·녹색관광형, 21세기 선도형 등 3개 유형별로 나누어 추진된 사업은 2001년과 2002년 사업량 23개소의 진행은 2004년에 마무리 되었고 재원의 부족으로 신규 조성은 중단된 상태이다.

<표 3-15> 연도별 사업량과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계	교부세	지방비	기타 (타부처 국비·자부담 등)
계	23개	52,859	23,000	13,105	16,754
2001년	9개	18,820	9,000	4,705	5,115
2002년	14개	34,039	14,000	8,400	11,639

자료 : 행정자치부(2004),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계획

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최근 정보통신기반, 정보기술 이용도 등에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인터넷 보편화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 노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생활화를 위한 정보접근 기회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마을정보센터』, 『사이버타운』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효과가 미흡했고 소관부처별 단편적 추진에 따른 콘텐츠의 편향성 극복을 위해 종합추진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2년에 인터넷 민원처리 등 전자정부 기반구축이 완성됨에 따라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의 수요기반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2001.4.17시행)』을 제정해 범정부적인 추진기반 확보하고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 학생과 노인 등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전자정부 수요기반을 넓히며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연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이 사업의 목표로 정했다(행정자치부,2004).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기타 사업들에 비해 해당 마을 수가 많고 인프라적 측면이 강하다. 사업내용으로 첫째, 가구별로 초고속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정보센터를 조성해 LAN구축, 무인민원발급기, PC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며 마을별로 100대 이상의 PC를 보급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보콘텐츠 구축확대 및 운영으로 1차 사업의 공동콘텐츠 보강 및 마을별 지역콘텐츠 구축하고 1차 시범사업의 콘텐츠 운영위탁·관리 및 운영기관의 운영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다. 셋째는 주민교육으로 주민 정보화마인드 제고 및 정보화지도자 육성이며 넷째는 운영체제 확립으로 시범마을별 지원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이다. 다섯째는 대국민 정보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범마을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용 입간판을 설치하고 배너광고, 팝업광고 등을 통해 인터넷 사용이 많은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on-line) 홍보와 언론매체, 홍보영상물, 지하철광고, 정보지도자 활용, 관련행사 개최 등 오프라인(off-line) 홍보를 동시에 실시한다.

<표 3-16>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서비스정보화팀)
사업 계획기간	2001년~2012년
사업량	총 1,420개
단위 사업기간	1년
사업비	3.5억(국비 60%, 지방비 40%)
근거법령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2) 추진현황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은 1차 산업을 2, 3차 산업과 연계 할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컴퓨터 이용 능력과 농수산물 판매가 늘어난 점이 호응을 얻고 있다.

<표 3-17>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차 조성 (‘01.9~’02.5)	2차 조성 (‘02.10~’03.6)	3차 조성 (‘04.1~’04.10)
마을 수	191개	25	77	88
PC 보급	16,959가구	2,722	7,427	6,810
정보화교육	65,599명	15,394	34,350	15,855
조성사업비 (지방비)	67,671 (19,671)	8,068 (1,068)	28,997 (7,997)	30,606 (10,606)

자료 : 행정자치부 (2004)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P2~3

6. 환경부 관련 사업

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 사업

1)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생태복원우수사례 선정은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자연자산을 자율적으로 보전·관리를 격려하기 위해 선정마을에 환경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와 인증 표지판 수여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약 100여 개소(복원우수사례 포함)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연생태우수마을은 가구 수가 20~50호 정도의 마을 중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인위적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없으며 지원내용으로는 환경부장관 명의지정서 및 인증표지판수여(유효기간: 3

년)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사례집 발간·배포, 사진전 개최, 언론매체 홍보, 환경부 예산지원 사업 우선검토 및 타 부처 예산지원 사업 선정 추천 등이 있다.

<표 3-18>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사업 개요표

구분	내용
주무부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사업 계획기간	2001년~2010년
사업량	복원사례 포함 100개
마을당 사업기간	지정
사업비	비 예산사업
근거법령	자연보전법

주 : 지정일은 01년도(2002.2), 02년도(2003.2), 03년도(2004.2), 04년도(2005.3)임.

2) 추진현황

환경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생태복원우수사례」로 총 100개소 선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1년에 14개소, 2002년 13개소, 2003년 15개소 등 총 42개소가 선정(자연생태우수마을 34개소, 복원우수사례 8개소)되었고 향후 2010년까지 58개의 우수사례가 더 선정될 계획이다.

제3절 종합분석

1.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이들 사업의 접근방향은 지역활성화, 지역 공동체, 전통 테마, 자연생태계 복원 및 보전 등 조금씩은 다르나 전체적인 방향은 소득향상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모아지고 있다. 이렇듯 기 추진중이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개발방향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관광 수요 시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표 3-19> 각 부처별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주무 부서	사업명칭	사업 계획기간(년)	잔체계획 사업규모	단위사업 기간	사업비	사업비 구성(%)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2002~2013	805개	1년	2억	국비 50, 지방비 50
농촌 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2002~2010	160개	2년	2억	국비 50, 지방비 50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	1995~2007	193개	2년	14억	국비 70 지방비 30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2003~2012	110개	-	0.8억	녹색기금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2003~	-	1년 미만	0.7억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998~2007	140개	설계 1년 시공 3년	사업규모에 따라 다름	-
해양 수산부	어촌체험마을	2002~2009	103개	1년	5억	국비 50, 지방비 45, 자부담 5
행정 자치부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2001~2004	23개	1년	15~20억	교부세10억, 지방비,자부담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2001~2012	1,420개	1년	3.5억	국비 60, 지방비 40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사업	2001~2010	100개(복 원우수사 례 포함)	1년 미만	비예산	-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주요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일부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없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사업 중심의 사업 성격을 띄고 있으며 지역 소득증대 방안,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세부사업 내용으로 볼때 기 추진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개발 이후 지속적인 관리 운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물량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지역민의 소득 증대 및 자연사업 연계 및 파급효과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병행추진과 사업 추진 이후의 관리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이 있다.

<표 3-20> 관광자원개발사업 세부사업 내용 분석

구 분		기본 계획 수립	법 적 근 거	관 광 기 반 시 설 정 비	편 의 시 설 확 충	전 문 가 참 여	상 품 개 발	주 체 역 량 강 화	소 득 증 대 방 안	타 사 업 과 의 연 계	평 가 및 모 니 터 링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	●	●	●	●		●		◎	●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	●	●	●	●	●	●			●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	●	●	●		●	●	●	●	●	●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	●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		●		●		●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	●		●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	●	●	●	●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		●	●		●		●	●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					●	●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사업		●							◎	

주 : 실행사항 : ● 권장사항 :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하드웨어에 편중된 국고 지원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집행 되어 도로 등 생활 기반시설과 경지정리 등 산업기반시설 같은 물적 개발사업에 치중하여 개발해 온 반면 상품 개발, 홍보,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지원 실적은 미흡하다. 자연 및 인문 환경, 경관, 문화, 향토자산 등과 같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소 판촉, 이벤트 등 소프트웨어 개발은 가시적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간과하기 쉬운 문제도 있다. 하드웨어 개발 중심의 지원 체계는 관광자원 개발사업 완료 이후 관리 및 운영상에서 능동적인 대응역량 미흡으로 지역의 자생적 관광발전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지역주민 및 운영자 교육, 관광객 및 관광자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안내, 전문가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별 동일 지역 중복 추진과 비효율성

현재 중앙정부차원의 업무분장 등에 따른 일회성 개별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는 중앙정부의 부처별 경쟁과 개별 접근의 비효율성과 관련이 깊다. 다양한 부처들이 각기 사업들을 전개하여 통합적인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은 유사 관광정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지원 효과의 반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정부 주도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지역의 수요 반영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매카니즘이 부재하고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 각 부처가 가진 수단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이나 사업 추진 필요성이 요구된다.

<표 3-21> 지역단위 개발사업에서 주요 유사사업 사례

구분	사업	소관 부처
하수처리시설 사업	읍면 하수처리시설 사업	환경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	행정자치부
	오폐수처리시설 사업	농림부
마을단위 주거환경 정비 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행정자치부
	문화마을 조성 사업	농림부
관광마을 조성 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농촌진흥청
	어촌체험마을	해양수산부
	아름마을 가꾸기	행정자치부
소규모 종합개발 사업	오지면개발사업	행정자치부
	정주권개발사업	농림부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

3)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미흡

사업의 평가 미흡과 모니터링 체계가 정례화 되어있지 않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지원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계속 사업의 경우는 사업 평가에 기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평가과정이 정례화 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중장기적 사업계획하에 추진하기 보다는 연도별 예산 투입의 적정성만이 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목표관리가 어려워 지역의 경제적 편익, 환경 보전, 전통문화 보호 등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4) 대상지역간 경쟁 심화

전국에 비슷한 목적을 지닌 사업이 진행되면서 비슷한 마을들이 난립하면서 마을간(주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성공사례가

알려지거나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은 경우 자신들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않고 다른 마을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마을들끼리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비슷한 체험만하여 특별하다는 인식을 갖지 못한다. 원인은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할만한 지역주체들의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와 협력부족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어 수직적-수평적 연계가 부족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적 지역개발의 추진이 곤란하다. 부처간은 물론 부처내에서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개발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결여된 채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시행되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유사한 사업이라도 사업방식, 사업일정, 투자재원 등을 서로 달리하는 파편화된 개발이 불가피하다. 관광자원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상호연계성의 부족으로 시·군 행정구역 전체의 입장에서는 여러 주무부처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공간을 통합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제각기 재원이 배분됨에 따라, 지방정부차원에서 관련자원을 통합운영하지 못하고, 주어진 재원을 집행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6) 지역의 어메니티 훼손과 환경오염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농촌의 고유한 풍경 등은 그 자체로 어메니티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품인데도 이것이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도시와 같은 풍경과 경관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소도시와 차별성이 없는 지역을 외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사업 이후 늘어난 관광객들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쓰레기 투기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7) 1차 사업과 2, 3차 산업의 연계부족

대부분의 마을들이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식사,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2,3차 산업과 연계가 안 되고 있다. 1차 산업이 2,3차 산업과 연계되려면 전문적인 마케팅과 홍보, 기술 개발에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것은 단기간 내에 모두 하기는 힘들다. 정보화 마을 사업을 통해 인터넷의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활용한 판매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것이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때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8) 사업 특화요소와 유형 불명확

관광자원 개발사업 내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관광자원에 대한 합의된 유형 구분이 없고 사업 제안에 있어 명확한 기준 및 예시 사업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영역 및 내용이 상호배타적이지 못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각 사업들의 영역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제안하는 시·군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의 추진 목표 및 방향 등이 최초 계획 의도에서 벗어나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 사업별 특화 요소가 없다는 것은 체험마을의 기반시설, 체험프로그램의 소재가 한정적이고 마을에서 선호하는 체험기반시설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유사 체험시설: 물레방아, 황토방, 사각정자, 마을입구 장승 등/유사 체험프로그램: 오리농법 벼 재배, 천연염색, 소달구지 또는 경운기 타기, 인절미 만들기 등). 농산어촌체험프로그램도 서로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테마 발굴 필요하다.

9) 각기 다른 목표의 개발로 통합적인 비전 도출이 어려움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들이 각 부처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접근함으로써 지역 전체로는 투자의 중복성과 사업간 연계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 나타난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등은 개발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

고 환경부의 경우 보존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사업별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방식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을 분할하여 관리함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정책의 통합성도 확보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시행 부처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장기전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22>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사업간 내용 중복	- 부처간의 사전 조율로 사업의 수와는 상관없이 한 마을에 상한 금액을 정함 ex) 20억 이하 - 각 부처가 논의하여 사업의 공동 기준을 설정하여 시·군에 전달 - 사업의 진행시 다른 부처의 계획서를 참고 및 반영
하드웨어에 편중된 사업내용	- 관광객 및 관광자원 관리 프로그램개발, 이벤트 및 행사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안내,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역주민 및 운영자들에 대한 수시 교육 - 지역 특화 부분에 관한 전문가 영입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미흡	-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점검 - 각 부처별로 비교 및 우수사례 공유 - 진행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포상 및 추가지원
농촌의 어메니티 훼손 및 환경오염	- 경관보존제도 실시 - 사업 선정조건에 어메니티 평가 비율을 높임 -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의 운동을 통해 해당 지역보호 - 사업계획서에 중·장기적인 계획도 첨부
마을 간 경쟁 및 특화 요소 부재	-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계획수립의 실시 -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프로그램 내용은 허용 안함 - 관광객들의 요구 및 희망사항 조사 - 성공 사례지역 및 해외 우수사례 시찰 - 지역별 자원 조사 및 D/B 구축
지역민 소득과 연결이 부족	- 1차 산업을 2,3차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 - 전문적인 마케팅과 홍보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온라인 판매 - 품질 인증제도 및 산업기반시설을 위한 대출지원
관광객과 지역민들 간의 갈등	- 지역민들의 관광마인드 교육 실시 - 관광객의 인식 변화와 사전 교류를 통한 이해

제4장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

제1절 협력체계 구축 방안

1. 기본 방향

정부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각 부처 차원에서 해당 부처의 업무분장에 따른 개별적인 형태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으로 정책적 일관성 부족, 효율적 사업추진 미흡 및 유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지원 효과의 반감 등을 들 수 있다. 즉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는 매커니즘이 부재하고 각 부처가 가진 정책 수단 안에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의 가장 큰 방향은 실무자들의 전문화와 상호간 협력에 바탕을 두고 관광자원개발 정책을 수립, 기획, 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협력체계의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체계의 매커니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을 부처의 업무 영역을 유지하면서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정책 수행의 합리적인 일원화가 필요하다. 타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관련 사무 중에서 총괄부처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업무는 과감하게 일원화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들의 단순 합의기능을 중심으로 한 통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의 수립도 염두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정부조직 편제상 불가피하게 문화관광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각 부처의 관광자원

개발 업무의 주요사항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이 조정 기능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되며 각 사업마다 독창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능으로 꼽힌다.

이러한 정책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협력체계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광 관련 업무의 총괄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협의체가 상설화되어야 한다. 첫째, 협력체계는 일정 부분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협의체의 구성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력이 강화된 의결권 및 조정권한을 부여하여 협력체계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둘째, 협력체계는 공공 부문에서 정책 결정의 유연성 및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협의구조로써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폭을 넓혀야 한다. 협력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핵심인데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협력을 지향하는 것 이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셋째, 협력체계는 기존 농림부 및 행정자치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관광부 주도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 주도의 협력은 기존 농림부 및 행정자치부 중심 협력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수요 시장의 요구 수용 결여 및 하드웨어 개발 사업 위주의 사업 추진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협력의 영역 및 지속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와 더불어 상시적인 관광자원개발사업 시책이나 사업의 연계 조정을 위해 협력체계의 요체로서 협의체가 상설화되어야 한다. 관광자원 집중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단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총리부 산하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중앙부처간 관광정책 실무단위의 조정기관인 관광대책관계성청 연락회의가 구성되어 관계 행정기관간의 업무 유대 강화 및 통합적 업무 수행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필요성과 외국의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 강화노력에 비추어 볼 때 중앙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연계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협력체계 구축의 대안 설정

가. 기준 설정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 체계의 큰 특징은 기존에 나타난 중복추진의 비효율성, 연계 및 조정 능력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력과 전문성을 강조한 조직체계라는 점이다. 추진력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국가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차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부처의 업무 영역을 보장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내용이다. 전문성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는 조정과 통합 기능을 갖는 심의·조정 위원회의 성격을 띠게 있다. 심의·조정위원회란 각 기관 또는 개인이 상이한 의견들을 통합·조정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 동일한 수준에 있는 상이한 정부조직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부처간 위원회 혹은 직책에 의한 위원회 및 협의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한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 체계의 위상(추진력 유무)과 민간 참여여부(전문성 유무)를 기준으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적정한 협력체계의 형태를 구성해 보았다.

구분	국무총리실 소속	문화관광부 소속
공공 주도형	대안 1	대안 2
민간 참여형	대안 3	대안 4

[그림 4-1] 협력체계 구축 대안

나. 대안 평가

1) 대안1 : 국무총리실 소속 + 공공주도형

국무총리실 소속이면서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공공주도형 협력체계인 대안 1의 장점은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부처 상호간에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결정 사안에 대해 총괄 및 조정이 용이하고 이러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결정에 이은 시행 또한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들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건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정책 결정이 어렵고 관광자원 개발 총괄부서인 문화관광부의 의견 수렴여하에 따라 핵심 정보에

<표 4-1>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 대안 1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 국무총리의 위상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총괄·조정이 용이함 - 국무총리실의 특성상 사후점검과 평가 기능까지 포함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체계를 갖출 수 있음
단점	- 국무총리의 본질적 기능상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같은 실천적·집행적 성격이 있는 현장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어려움 - 정책집행과정에서 일반부처가 지니고 있는 일선지방에서의 집행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의 실제적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움 - 예산의 집행, 사업지역의 선정 등에 투명성과 감시능력이 떨어짐

2) 대안2 : 문화관광부 소속 + 공공주도형

대안 2의 장점은 전문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와 각 부처의 실무진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강하고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위상과 직제가 비슷한 구성원들끼리 모여 있고 각 사업에 대한 부처의 전문성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 할 경우 합의기간이 장기화되고 합의되는 사항 없이 시간만 낭

비할 가능성도 있다. 또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간섭과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표 4-2>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 대안 2의 장단점

구분		내용
문화관광부 산하 측면	장점	- 관광자원개발 주무부서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사업의 계획과 지원제도 등에 전문성을 가짐
	단점	- 타 부처에서는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한다면 반발이 예상됨, - 문화관광부에서 마을단위 개발사업과 별다른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공공주도형 측면	장점	- 공무원들끼리의 논의로 사업관련사항에 대한 처리와 집행이 빠름
	단점	- 지역의 실제적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움 - 예산의 집행, 사업지역의 선정 등에 투명성과 감시능력이 떨어짐

3) 대안3 : 국무총리실 소속 + 민간참여형

대안 3의 장점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의견을 표출 할 수 있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중요 사안에 대한 부처 장악력이 높아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협의체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중복투자를 막고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제안을 수용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다. 대안 3은 민간위원들이 철저한 검증능 거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는 전제 하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의지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표 4-3>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 대안 3의 장단점

구분		내용
국무총리실 산하 측면	장점	- 국무총리의 위상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총괄·조정이 용이함 - 국무총리실의 특성상 사후점검과 평가 기능까지 포함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체계를 갖출 수 있음
	단점	- 국무총리의 본질적 기능상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같은 실천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현장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어려움 - 정책집행과정에서 일반부처가 지니고 있는 일선지방에서의 집행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민간 참여형 측면	장점	- 정책의 선정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이 높아 짐 -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시각과 집행방식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보다 다양화 될 수 있음
	단점	- 민간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많음 - 특정 지역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질 될 수 있음

4) 대안4 : 문화관광부 소속형 + 민간참여형

대안 4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 점이다. 사업 계획과 진행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등이 쉽게 표현 될 수 있으며 각 부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가운데 확실한 총괄·조정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 의견은 많이 나오지만 결정사항이 나오기 어렵고 결과물이 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많다.

<표 4-4>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 대안 4의 장단점

구분		내용
문화관광부 소속 측면	장점	- 관광자원개발 주무부서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사업의 계획과 지원제도 등에 전문성을 가짐
	단점	- 타 부처에서는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한다면 반발이 예상됨, 문화관광부에서 마을단위 개발사업과 별다른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임 - 국무총리소속의 기관보다는 총괄·조정 역할이 줄어들 것
민간 참여형 측면	장점	- 정책의 선정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이 높아짐 -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시각과 집행방식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보다 다양화 될 수 있음
	단점	- 민간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많음 - 특정 지역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질 될 수 있음

최근 들어 중앙정부 부처간 복합적인 성격의 정책 문제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부처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한 부처 내 위원회 보다는 관련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이 더 합당하고 할 수 있다(최재승, 2002). 또한 예전에 공무원들만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던 폐쇄형 체계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개방형 체제가 일반화 되고 있고 감시의 기능과 조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여러 대안들 중 대안 3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관성과 협의체 구성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 협의체 구성

가. 필요성

정부조직법상 관광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부 관광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국·내외 제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각 부처별 추진 업무도 변화하고 있고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여가문화확대 분위기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주무업무에 관광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환경부 등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광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교부,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관광자원개발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표 4-5> 주요 중앙부처별 관광 관련 업무 내용

부처명	담당부서	주요 업무 내용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어촌관광휴양단지, 어촌민속전시관 조성, 체험관광마을 육성 등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농촌관광 홍보 및 마케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등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국 (농촌생활자원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지원, 농촌체험활동 지원 등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휴양정책과)	산림휴양시설·산림욕장 및 숲속 수련장 조성·운영 지원, 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관리·운영,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등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철새조망시설, 자연학습원 및 생태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등

각 중앙 부처는 당해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외부에서 보면 중구난방 형태로 개별 사업들이 혼재되어 추진되고, 이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각 부처입장에서는 당해 사업들이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각 부처별로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명분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부처로서 농촌 관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 및 해양자원을 관할하는 부처로서 해양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들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조정과 통합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부처 이기주의로만 볼 수만은 없다. 극단적으로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사업 중복, 예산의 중복투자, 사업간 효율적 연계 부족 등)’이라는 부정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부처 고유의 특화된

관광자원개발을 인정하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통합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나. 구성 방법

각 부처의 입장과 이해관계로 인하여 관광자원개발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기능적 조직이 필요한데,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협의체는 각 부처간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조정·통합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의체의 성격을 띄는데, 그 이상의 강력한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앞서 대안 설정 기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문화관광부가 주도가 되는 단순한 협의체의 구성보다는 보다 상위 기관(예를 들면 총리실 등)에서 조정·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문화관광부는 간사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협의체를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 구성 체계를 일부 변형화 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문화관광부가 협의체를 주도하되, 위원장은 상위 기관(예를 들면 총리실 차관급)에서 담당하고 문화관광부 관광국장이 간사역할을 수행하여 협의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위기관에 설치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정책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하는 협의체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차원은 '위원회',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이 있을 수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대안은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은 높으며, 부처별 시책조정과 협의를 토대로 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앙정부 부처별 관광정책협의체의 범위는 일본의 관광대책 성청 연락회의와 같은 중앙부처간 실무단위(국장급)의 협의체 구성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의체 성격은 상설협의체 구성하여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개발사업 총괄위원회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본위원회와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는데 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직을 맡아 상호의견 교류를 돕고 실무협의회에서 건의되었거나 주요 논의 사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4-6> 본위원회 구성

구분	내용
위원장	국무총리실 차관급
간사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당연직 위원	-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민간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5인

정부의 협의체 설치 근거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감사원이 2003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517개의 위원회 중 헌법이 4개, 법률이 290개, 대통령령이 89개, 각 부처 부령·훈령 등이 134개이다. 관광자원개발사업 협의회는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각 부서의 통합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협의체 기능 및 역할

1) 조정 및 통합 기능

각 부처별 추진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있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며, 서로 독립·특화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연계를 통한 통합이 필요하다. 이는 반드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업을 선정하는 프로세스에서부터 향후

사업을 홍보하는 마케팅 활동까지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연계와 통합을 포함한다.

2) 공동 사업 추진

협업체 구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 상호간의 협력하에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있다. 각 부처가 협력을 하며 관광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 사업 발굴이 시급히 필요하다. 가령 권역단위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부지조성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 조성 및 운영은 농림부에서 운영함으로써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노인주거복합단지’의 경우 농림부(농업기반공사)는 주거단지 및 농업생산단지 조성을,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부지 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서 각 부처의 역할이 부여되고, 종합적으로 문화관광부가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기대 효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첫째, 관련 기관간의 정책의 조정이 쉽고 연계성이 강화된다.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부처간 업무의 독립성으로 인해 타 부처의 협조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나 협의회인 경우 소속이 문화관광부이든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이든 관계없이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정책에의 반영통로가 열려 있어 정책조정 및 연계적 측면에서 용이하다.

둘째, 관광자원개발 정책의 포괄적인 기능이 강화된다. 일반적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이란 관련 부처의 업무범위가 넓어 다양한 의견의 교류와 합의가 가능하고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다룰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갖추어 진다면 전국적인 행정가능하므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 전문성이 확보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는 관광자원개발 협의회는 공무원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부처들보다 다양한 시각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자원개발위원회를 자문기구를 추가하여 조직 내에 설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제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넷째, 시민참여가 활성화된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수립 및 집행시 일부 위원을 학계 또는 관련 시민단체에서 위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가 보다 시민참여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지역위원회의 위원을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위촉한다면 다양한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견제와 균형 및 이해관계의 조정을 들 수 있다. 조직 내부적으로 한부처가 결정하는 단독제 기관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제 기관이 행정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협력체계 운영 방안

1. 기본 방향

협력체계 구축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의 개발수단을 근거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정 통합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조정과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정부부처가 자율적 메카니즘에 의해 자발적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협력방식을 모색하는데 있어 상당한 현실적 제약과 부정적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급적 부처간 자율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실현가능성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 상호간의 참여와 유인수단이 요구된다.

둘째, 협력체계 추진 차원에서 규범적 처방 즉, 제도적 틀과 접근방식의 강구보다는 기능적 차원에서 협력체계 내에서의 일상적 상호작용 촉진, 협력 문화·기술 공유, 협력참여자의 행태 개선 등 협력적 인식 공유에 근거한 적극적인 현실적 협력과 제에 초점을 맞춘 실무적이며 현장적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협력체계의 운영 방안을 기존 혹은 새로 거론되는 거시적 제도 중심의 방안 강구와 함께 협력체계 준비과정과 실질적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이고 실질적 운용 방안 강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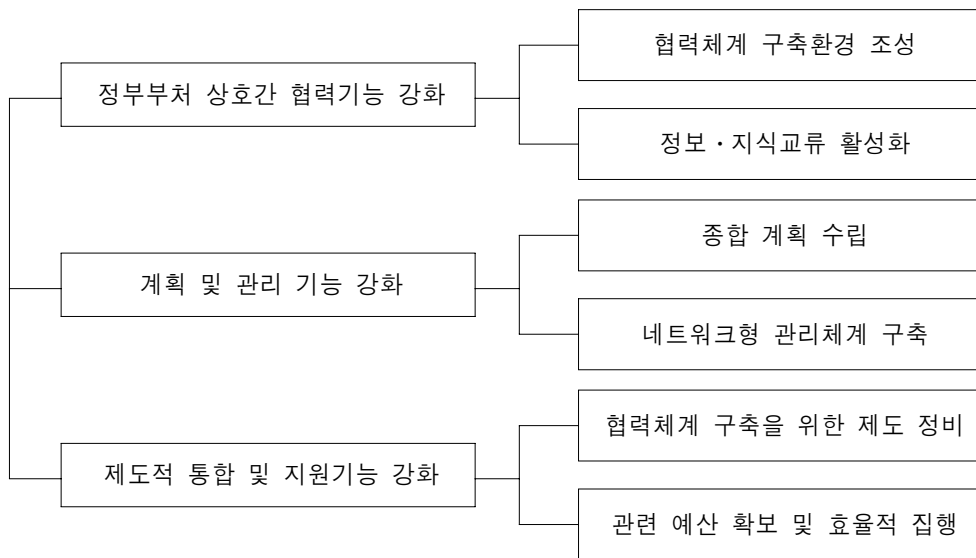
셋째,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의 대상은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협력체계 운영방식을 고려할 때 이들을 전부 포괄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 내용과 특성이 유사한 사업들을 단일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개별 유형마다 사업 활성화 방식 가운데 가장 적합하고 효용성이 높은 방식을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협력체계 안에서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의 현장성과 실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부처 상호간의 협력 기능 강화, 계획 및 관리 기능 강화, 제도적 통합 및 지원 기능 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부처 상호간의 협력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중앙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협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다. 우선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주체간 각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둘째,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적 계획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실제,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들은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시·군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되고 있다. 사업추진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는 사업선정에서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원체계 하에서 지원되는 것이 협력체계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부부처의 업무 영역을 보장하면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 계획 수립 및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통합 및 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한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먼저 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미시적으로는 부처간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상호간에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고 거시적으로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부처 상호간의 호혜의 원칙하에서 통합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 협력체계 운영방안

2. 운영 방안

가. 정부부처 상호간 협력 기능 강화

1) 협력체계 구축 환경 조성

① 필요성

선행 연구에서 자치단체간에 협력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추진동기와 사업의 성공 및 실패요인 들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의 협력에 대한 전문적 가치관(태도), 심리적 만족도(협력의지)등과 같은 행태적 성향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표환 외, 2002).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의 관련 업무 담당자와 기관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타부처 관광자원개발사업 담당자 가운데서 관광에 대한 전문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처를 초월하여 협력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체계에 참여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 보면 전문적 가치관과 심리적인 만족도 등은 협력체계 안에서도 협력의 객체들간 이기적인 사고로 인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부서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독자 수행의 의지가 강하여 협력을 통한 공동 사무처리가 최후의 선택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든지, 타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사업에 피동적으로 따라감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경우에 이러한 성향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부처간 협력체계 추진과정에서 관련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동수행 방식이 부처의 자율권 즉, 권한이나 영향권의 침해를 우려하거나, 문제 해결 및 업무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갖는다는지, 혹은 타부처와의 경쟁관계가 유지되어 자신이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협력체계 구축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관광 교육과 더불어 협력체계 구축의 궁극적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학습)과 실질적 성과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협력체계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를 견지하

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 관광 및 협력 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관계 부처의 관련 공무원에게 정부부처간 협력의 긍정적이고 전향적 효과를 부각시키고 아울러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의 추진을 염두에 둔 전략적 사고 형성을 위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 등을 기초로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선진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들에 대한 정부부처간 협력의 정책방향이나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벤치마킹 사례 등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앙부처 관광자원개발사업 담당자에 대한 공무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에서 1년에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③ 관광자원개발사업 성공사례 평가회 개최

중앙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각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쟁적 분위기를 확산을 통하여 협력체계 구축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 관광자원개발사업 성공 우수사례를 평가하고 시상하는 대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전체의 사업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성공 사례를 개별적으로 접수받거나 추천 받아서 관광자원으로서의 다양한 가치와 수요자 공급자간의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자원으로서 성공 사례에 대해 평가하고 시상한다.

④ 인력 교류 및 전문가 활용

우선 지역관광사업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시행전 사업집행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학습이 필요하며 중앙부처간 인력 교류가 활

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부처별로 관광자원개발사업 담당 공무원의 관광전문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별 담당전문가 지정 제도 및 컨설팅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부 지역 활성화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담당 전문위원 또는 패밀리 닥터와 같은 전문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학자와 함께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계획 검증, 실행, 사후평가까지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고 준비에서 실행까지 전문가 활용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2) 정보·지식교류 활성화

① 필요성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 조직 차원에서 축적해온 핵심적인 지식·정보 및 기술을 일정한 상호전달 체계를 통하여 수시로 교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향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또한 이러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기술, 인력 등 다양한 선결해야할 내부 역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관광분야의 특성상 이러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식·정보 및 기술에 대한 취득비용과 학습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원활한 교류는 더욱 중요하다.

② 관광자원개발사업 포털사이트 구축

현재 온라인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는 각 부처별 사업별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직접적인 관리운영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홈페이지가 공통적으로 지역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관광안내 및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공급자와 쌍방향 교류를 할 수 있는 체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실질적인 방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을 통해 다시 공급자와 접촉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확인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정보의 질, 양도 충분하지 못하여 특히, 숙박 및 음식 정보 등 관광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정보 내용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가 부처별 기관별로 개별적 운영 시스템을 취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포털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자원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http://www.visitkorea.or.kr/>)는 국내 관광지 전체를 국도립공원/명산, 폭포/계곡/약수터, 해변/섬,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의 20개 카테고리로 소개하고 있는데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체험관광 카테고리에서 일부 소개하고 있다. 이를 전체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보 제공은 직접 관련 해당 대상지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 각 사업별로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링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기존 사이트의 활용 측면에서 가능하다. 수요자들은 한국관광공사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링크된 관광농원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관광공사의 홈페이지는 도시 소비자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용이 활발하다. 따라서 이 사이트의 장점을 살려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지역, 체험하고자 하는 내용 등에 적절한 목적지를 안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 즉 교통수단, 숙박시설, 체험내용 등을 보완하여 온라인상에서 예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특산물 판매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지역별, 목적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시 수요자가 특정 지역에서 관광 체험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지역의 관광시설 경영체를 검색하고 교통편, 체험프로그램을 알고자 할 것이다. 또한 숙박시설의 형태나 이용요금에 관한 정보도 미리 알고 싶을 것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를 종합한 뒤에야

비로소 목적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며 쉽게 검색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야 한다.

나. 계획 및 관리 기능 강화

1) 종합 계획 수립

① 필요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앙부처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부처간 협력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미흡 및 체계적인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정책 부재로 나타나 상당부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체계 및 관리체계가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천력을 가진 종합적인 개발계획체계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개발 기능들의 연계와 협력방안들이 국가 정책체계에서 누락되어 있다.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타 부처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들은 중앙부처별 개별적으로 정책을 구상할 수 밖에 없다. 어느 한 부처가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앙의 관련부처들이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 정책이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다.

둘째, 부처간에 추진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별로 정책적 지원기준이 상이하다. 일본 등과 같은 주요 관광선진국에서는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별로 정책적 지원기준이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별로 각기 다른 정책적 지원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관광환경 개선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의 유명무실화, 사업 성과에 대한 관리 체계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계획 및 관리와 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②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부처별로 행해지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일부 부처에서는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타 부처 관련사업과의 연계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부처별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정한 관광 수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렵고, 부처간에는 일관된 관광자원개발 관련 정책 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한 타부처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목표를 명확히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선정 자문,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 및 활성화 기본 계획은 5년과 10년을 기준으로 중기와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에 맞는 정책적 지원 방안, 전략적 사업추진 모델 지역의 선정 및 육성, 관광자원개발사업 목표 규모, 다양한 마케팅 활동 추진이 가능한 관광객 유치 전략, 관련 행정 조직 및 지원 조직의 기능과 업무분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으로 첫째, 계획수립단계에서 상위계획의 참조가 필수적이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상위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 관광관련 상위계획을 참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상위계획과 배치되는 경우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각종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계획수립 및 시행의 자율성 보장하는 것이다. 계획수립단계에서 관광관련 상위계획의 참조를 촉구하는 범위에서 부처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업계획안 수립단계에서 관광전문가나 관계자들의 기술지도나

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활용하게 하는 범위에서 자율성 보장해 주어야 하며 책임부서와 사업진행상의 주체, 업무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 후의 사업 진행은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네트워크형 관리체계 구축

① 필요성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이 비슷한 여러 사업을 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문화관광부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과 효율적인 자금 집행의 곤란, 지역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대부분 일회성 자금 지원에 그치고 있어 당면과제 위주로 자금이 집행되어 미래를 전망하고 비전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②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및 후속 지원방안 강구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면 사업추진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은 타 사업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또한,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요인을 명확하게 찾아 내지 못해 유사사업 추진시에 똑같은 전철을 밟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와 모니터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협력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계획 수립에 따른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사업목표의 달성여부와 사업집행체계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적절한 시기와 대상을 선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추진 성과에 따른 사후평가와 집행단계의 과정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추진 지연 및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 주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추진완료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유사사업에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실패사례를 통한 완료시점에서의 과오를 최소화하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의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성과평가의 실시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기본계획의 현실성을 높이고 실패의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사업에 대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성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와 투자금액에 대해 단순히 산출물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효과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전후방효과에 대해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관점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대상사업 들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방안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분석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성공사례 수집 및 배포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성공 사례는 타 산업에 비해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례를 수집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성공적 모범사례의 창출은 향후 관광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촉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협력체계 안에서 타 부처의 협조를 통해 성공적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활용가치 뿐만 아니라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모범사례는 완료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 완료 후 관리·운영까지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우수사례로서 향후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의 창출을 통하여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 및 실질적업 사업집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벤치마킹의 사례로써 유사사업에 대한 계획 및 사후 관리·운영의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주체인 지역민들에게 사업 추진의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관광자원개발사업 실패의 근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④ 매뉴얼 작성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은 마을 어메니티, 숙박시설 등 관광 편의시설 등 관광상품으로서 질적 수준이 낮다는 점, 추진하는 주체가 대부분 개인 농가로 관광 및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고, 지역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의 만족 저하 및 지역성 결여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사업추진 주체인 지역민의 특성상 영세성과 협소성을 띠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질적 확보차원에서 이들의 서비스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즉 수요측인 도시민의 요구에 적절한 민박, 펜션 등의 숙박서비스와 식음 등의 소프트적인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해야 한다.

서비스 매뉴얼은 각 지역의 어투, 관습 등의 생활문화와 기본 서비스가 적절히 융화되어야 하므로 협력체계 내에서 각 지자체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뉴얼의 내용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하고 칼라 삽화를 곁들여 읽기 편안하게 한다. 기본적인 응대 예절, 식사 서비스, 객실 서비스, 판매서비스, 안내서비스, 외국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되,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서비스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전 지역 공통으로 적용하되 서비스로의 구체적인 접목부분은 각 지역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사례를 함께 실어 이해를 높인다. 예를 들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들은 제주도의 '흔저옵서예' 한마디로 훨씬 기분 좋은 비밀상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제도적 통합 및 지원 기능 강화

1)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① 필요성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도 정비의 목적은 각 부처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의견을 조정하고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농산어촌의 관광자원기반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원하는 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 정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산림청의 산촌개발사업(산촌체험사업의 경우에 한함),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시범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사업,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사업 등이며 향후 협의에 지속적으로 추가 될 수 있다.

② (가칭)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 현장의 제정·운영

중앙부처 상호간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며, 그리고 다양한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협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중앙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현장을 제정하여 중앙부처간 협력의 기본 틀을 형성해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주도하고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중앙부처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체결하여 공표하도록 해야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현장이 체결·공표되면 비법규적 수단을 통하여 부분적인 이행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협력 현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협의하기위해 총리실의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의 구성 내용과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야할 다양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각 부처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시행지침,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공동기획·조정을 통한 사업간 연계 사항,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력양성, 홍보 등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통합, 전문화 등 사항 등이다.

이러한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현장은 본질적으로 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가 제일 관건이 될 수 있다. 현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간 공동 결정, 공동 사업, 행정 협의, 정보 교류, 물적 자원 및 재정의 교류, 분쟁해소절차의 기본원칙과 의사진행 및 결정의 기본원칙 등을 중요 내용으로 규정하여 중앙부처 상호간에 신뢰를 통한 위상정립을 유도해야 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현장의 선언적 특성을 불식시키고 중앙부처간 실질적 협력의 제도적 틀로서 정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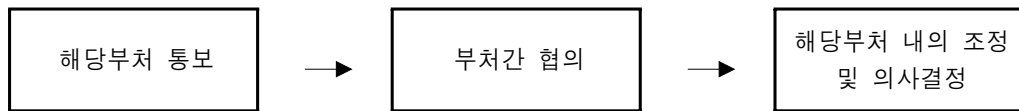
키기 위해서는 부처 상호간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반 노력을 강구하며 이를 준수치 못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내외적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부처간 업무합의서 등 법적 효력 유무에 상관없이 협력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및 합의를 어느 일방이 파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술 지원 및 업무 협조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벌칙 조항을 명문화하여 현장의 실효성과 제도 운영 성과를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현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 이행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기초하여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해당 부처 책임자가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③ 사전 협의제도의 도입

정부부처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해 사전 협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사전협의제도는 기존 지역개발정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전협의제도와는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운영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협의제도의 역할은 합의된 중요한 사안(신규 대상사업 선정, 지원규모의 조정, 지원내용의 조정 등)에 대해 특정부처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 부처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중복 사업 지원 및 업무 효율성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전협의제도는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이해관련 정부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강제하는 제도이지만 반드시 합의를 맺거나 협의의 결과를 강제적으로 도출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협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하지는 못한다.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그 법률적 근거를 어디에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선언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현장에 이를 명문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의 실질적 효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별적 법률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4-3] 사전협의제도 운영 절차

④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

협력체계 운영 및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공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주5일제 근무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부처간 경쟁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부처간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쌍방향 정보 교류나 공유가 빈번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교류 및 공유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부처별로 유사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는 해당 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정부부처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간에 이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상위차원의 기본계획과 이의 순차적인 추진을 위해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협력가능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부부처별로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타부처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이에 대한 계획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정부부처간 협력체계 내에서 상호 협조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부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공개·활용하는 이른바 관광자원개발사업 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개별 중앙부처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각 부처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함으로써 사이버공간상에서 각 부처 관련 담당자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발굴·연결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아니면, 가장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취합하여 단일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부처별로 요구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결시켜주는 집중화된 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관련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 집행

①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유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다른 산업 및 개발사업 분야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 및 수익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생적인 발전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부처별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다양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처별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 이외의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예산 발굴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지역관광개발사업과 관련된 하드웨어 사업은 대부분 균특회계로 이관된 상태이다.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크게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융자사업의 경우 관광산업체 융자지원에 활용되고, 보조사업의 경우는 관광객 유치기반조성사업, 관광상품개발 보급, 관광 홍보, 국제회의산업 육성 등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과 관광정보 제공, 국민관광 활성화 지원 등 국민관광 진흥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예산 중 운용의 탄력성을 감안할 때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조사업의 항목 중 국민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민관광진흥진흥 사업의 계정에서 타부처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 지원은 타부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공동추진사업, 포럼활동 지원, 산·학 협력사업 등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대

실질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서 결정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조정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었다. 2005년 기준으로 정부의 전체 일반회계예산 200,654백만원 중 약 98%에 달하는 196,454백만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 상태이다. 균특회계의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대부분의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에 편승하여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크게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구분된다. 우선 ‘지역개발계정’은 오지·도서·개발촉진지구 등 낙후지역 개발 사업,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SOC 건설 및 재해예방 사업 등에 지원된다. 다음으로 ‘지역혁신계정’은 지방주도의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지방대학 육성 등) 등에 지원된다. 관광분야의 일반회계사업중 지역개발 관련사업은 대부분 지역개발계정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대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예산지원 창구가 단일화됨으로써 향후 지역발전의 대안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비중의 확대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역 성장기반으로 활용가능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 발굴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정부차원에서도 낙후지역의 발전대안으로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개발계정 중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제3절 협력체계 추진 과제

1. 기본 방향

정부부처 상호간 협력체계를 통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들은 농림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나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관광부문에 바탕을 둔 시도는 미흡하였고 향후 협력체계 안에서 사업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우리나라 관광환경이 처한 특수적 상황과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활용에 있어 현실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본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를 통해 추진해야 할 전략 및 과제들의 기본 방향을 설정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시장 창출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타 부처의 입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장에 관한 조사와 예측이다. 정부부처들은 나름대로 해당 부처의 추진 업무와 관련된 시장 조사는 별도로 이행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관광트렌드의 변화나 수요의 예측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관광, 해양관광 등 세부시장의 변화는 언제나 전체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시장의 창출을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통한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관광자원의 어메니티 확보를 위한 관광자원 공급 기반의 양적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이후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지역의 선택과 책임은 더욱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역의 고유성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고 이러한 지역 고유성의 확보를 위해 양적, 질적 관광자원의 공급기반을 확충해야 하고 나아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 성장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 추진 방식이 정립되기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 단위 사업추진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적 관점에서 부처간 협력체계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도출하여야 한다. 관광사업간 유사사업의 중복 추진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투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유사 사업간 효율적 역할 분담을 도

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추진 주체의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기존 추진되어 왔던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하드웨어 사업만으로는 지역사회 활력 증진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 개발만으로는 안되며 관리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하다. 더욱이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들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추진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들로서 다각적인 사업 내용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림 4-4] 협력체계 추진과제 기본 방향

2. 전략별 추진과제

가. 신규시장 창출

1) 요구도 조사 정례 실시

① 필요성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지역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함에도 정책 결정권자들이 지역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여건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의 요구사항 및 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사업 대상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 행정절차의 복잡 등으로 이들의 요구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부처별 정책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역민의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를 위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전체 대상사업 중 각 사업 및 지역별 모델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민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 요구도 조사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주 대상 지역인 농산어촌의 주요 관광시장은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민이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급자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도시민에 대한 시장조사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추진되어왔던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대부분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요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수요 시장 창출은 고사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진정한 관광시장의 확보를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방문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와 생활,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사업 잠재관광시장은 물론 재방문

유도를 위해 관광객들을 현장에서 조사하는 관광객 시장 조사 분석 연구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민 요구도 조사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지역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함에도 정책 결정권자들이 지역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여건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의 요구사항 및 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사업 대상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 행정절차의 복잡 등으로 이들의 요구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부처별 정책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역민의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를 위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전체 대상사업 중 각 사업 및 지역별 모델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민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체 사업 대상지역을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요구사항을 구분할 수 있으나 시간적 재정적 제약성을 고려하여 적정 기준을 가지고 모델지역을 선정하고 모델지역에 대한 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요구의 변화, 개발에 따른 성과 분석 및 다양한 부가적인 조사들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상지역 선정 이전에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있는가, 지역의 개발잠재력은 높은가, 사업 추진 주체들의 개발 역량은 보유하고 있는가 등의 여러 선행 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잠재적인 관광자원개발사업 관리와 더불어 향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다. 요구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이 요구하고 관광객이 요구하고 희망하는 형태의 관광자원 유형 파악이 용이하고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개발이 가능하고 지역의 문화와 어메니티가 스며있는 지역친화형 관광자원개발이 가능하여 추진 사업의 성공률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나. 관광자원 공급기반 개선

1) 농산어촌관광 기반 조성 확대

① 필요성

농촌·어촌체험, 친환경농업, 전통문화 등 다양한 테마로 농산어촌 관광마을을 조성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 주말농원 등 농산어촌 관광휴양자원은 민간 주도하에 사업별로 농업과 연계하여 보전·개발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늘어나는 휴양수요에 대처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포럼」을 결성하여 농촌관광 방향 제시 및 주민·전문가·소비자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② 농산어촌 체험마을 확대

농산어촌 체험관광 수용기반 확충을 위해 농사·어촌체험, 친환경농업, 전통문화 등 다양한 테마로 농산어촌 관광마을을 조성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도·농교류 촉진하고 부처별로 사업내용을 특화시켜 체험마을 조성 확대('09년까지 706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실무 협의회를 통하여 농산어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력하고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민박, 주말농원 등 농산어촌관광휴양자원은 민간주도하에 개별사업별로 활성화 추진한다. 농산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저해요소 정비 및 농산어촌 관광관련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③ 지역 향토자원의 발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협력체계 내에서 역할분담 체계를 정립하여 경쟁성·차별성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향토자원 DB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향토 자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지리적 명칭의 개별상품에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가공품의 시장 차별화로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향토 상품에 대한 단체포장권 등록 등 권리화 지원을 통한 타 상품과의 차

별화를 유도하고 브랜드 개발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향토전통음식, 문화의 세계화로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기호파악과 우리고유의 식문화와의 연계로 전통음식의 세계적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다. 식문화 연계하여 한국형 식문화의 상품화, 테마향토식품, 외식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품질향상부문에서는 제조법 표준화, 식품의 기능성 강화, 유통·포장의 현대화한다. 규격화, 영양표시제를 통한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세계 지역별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 및 홍보 등 마케팅 부분의 역할도 강화한다.

2) 지역 경관정비 사업 추진

① 필요성

도시민 설문조사에서 농촌관광을 가는 주된 이유는 전원감상(39.5%), 자연탐방(18.5%) 순이며 농촌관광 지역으로는 자연환경의 보존이 잘되어있거나 환경친화적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54.5%)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시현외, 2003).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대상지가 되는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나 먹을거리 판매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자연 환경과 경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경관을 가꾸는 노력은 제도, 사업, 주민참여 등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건교부 소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부 소관의 「자연환경보존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이 있으나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표 4-7> 경관관련 제도 현황

관련 법규	주요 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 시·군기본계획과 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을 부문계획에 포함 - 경관지구(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측면에서의 관리를 할 수 있음 - 개발행위허가제를 근거로 삼아 개발행위를 심사할 때 주변경관과의 조화 여부를 중요한 심사요소로 활용
자연환경보전법	- 경관형성 및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수는 많지 않음) - 경관형성 및 자연경관보전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관형성계획 및 자연경관기본계획의 수립,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경관형성심의위원회 및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행정계획, 개발계획,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승인 과정에 있어서 미리 환경성을 검토하는 제도인데 여기에서 검토 항목으로 지역 경관이 포함됨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경관영향평가 포함

② 지역 경관정비사업의 추진

경관정비사업의 대상은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지 주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자연 및 인문 경관 요소를 유지 보수하는 형태로서 초기에는 기 추진된 사업부터 불량경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점차적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정비 사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관정비사업으로 예를 들면 마을 꽃길 조성, 경관작물 형성, 성황당 보수, 당산나무 주변 정화, 마을지붕색 조화, 마을 담장 정비, 산울타리 조성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관정비사업은 주민이 작성한 경관정비 계획을 기초로 삼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경관협약제도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경관협약제도와 경관보전 직불제의 도입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해 경관정비사업과 연계하거나 혹은 별도로 경

관협약제도와 경관보전 직불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경관협약제도는 주민의 자발적인 경관보전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경관보전에 관한 협약이다. 협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경관정비사업비 지원 또는 시범마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을 단위 경관협약제도는 상황에 따라서 경관보전 직불제와 연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논농업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등의 지원조건으로 마을 단위의 경관보전 노력을 명시하고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경관협약제도는 생산조정제와 연계될 수 있다. 생산조정 대상 농지에 관상수 등 경관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형식이다. 경관협약을 도입함에 있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전원지킴이 사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이 적절한 예이다. 전원지킴이 사업은 1991년에 방치 혹은 과다 방목 상태로 두면 황폐위기에 처할 수 있는 지역의 경관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 레크리에이션 기회 증대, 농가 경제 지원 등을 위해 정부에서 경관협약 제도를 도입하였다.

<표 4-8> 영국의 전원지킴이 사업에서의 경관관리 계약 내용

(단위: 파운드/ha)

경관의 형태	관리 내용	연간지불액
석회암의 초기경관	- 기존 영구초지의 관리	50
	- 영구초지의 재생	210
저지대의 히스경관	- 기존히스의 관리	50
	- 기존 영구초지의 관리	250
수변경관	- 전통적인 수변경관의 재생	225
	- 염수습지(salt marsh)의 관리	20
해양경관	- 버랑녹지대 혹은 사구의 관리	50
	- 반자연식생의 재생	225
	- Enclosed Moorland에서 식생의 성육촉진	15+15
	- 농업목적으로 개량된 토지에서의 Heather Moor의 재생	(최초 5년간)
고지대경관	- 전통적인 목초지 혹은 건초 목적지(Hay Meadows)	50

다. 사업추진역량 강화

1) 산·학·협력사업 추진

① 필요성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전문가의 참여 부족과 지도자 확보를 위한 대책 부재이다. 지역차원에서 관광 전문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 관광산업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관광자원 협력체계를 통해 원활한 산·학·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새로운 지식 창출 및 지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식 인프라의 핵심인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광 부문의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현장의 수요가 대학에 원활히 전달되고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기업 및 지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채널이 구축되어야 한다.

②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과 학교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나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처에서는 아직까지 산·학·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과정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이 관광 전문인력 양성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지역 대학의 역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 부문의 전문적인 연구 능력을 갖춘 지역의 대학을 선정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지원 및 협력 기능을 담당할 산·학·협력의 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광역지자체의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하고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지역과의 협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관광관련 대학과 산·학·협력이 맺어진 학계를 대상

으로 지원제도 확보가 필요하고, 관광산·학 협력업체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우선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산·학 협력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지방대학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관광실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연구기관,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교과과정내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현장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현장 종사자를 전문강사요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산·학 협력 중심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과 연계되는 지역관광벤처단지를 육성하여 대학과정에서 발굴되는 창의적인 관광벤처기술 및 아이디어를 지역관광발전의 동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지역관광사업 유형별 산·학·연 협력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선별적 지원을 통한 산학협력의 전파·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광분야의 산·학·연 협력시범사업은 관광분야의 혁신추진의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관광혁신을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내 현장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해야 하고 지방대학은 지역의 관광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관광실무능력 배양과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에 맞게 지방대학의 구조와 운영시스템을 재조직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과 지역정보 및 산업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일회적 산·학·연 협력에서 계속적·조직적 산·학·연 협력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산·학·연 협력시범사업의 추진은 관광혁신클러스터의 육성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관광혁신클러스터는 산업단지 중심의 일반 혁신클러스터와는 달리 지역사회 중심,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한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이들 지역 내지 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별적인 관광기업, 지역대학, 지역연구기관은 다수 존재하나 이들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주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학·연 협력시범사업은 우선 중문관광단지, 보문관광단지, 강원도 평창군 등 혁신발전이 필요한 지역 내지는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대학이 주도하여 혁신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추진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협력 및 연계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④ 관광자원개발 포럼 설립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지역관광자원개발 포럼의 설립 및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포럼 활동을 통하여 실현성이 높은 정부부처간 협력 사업의 발굴과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포럼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협력의 당위성에 대한 말이나 글보다는 실제적인 성공사례의 가시화는 공감대 확산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럼 활동은 해당 부처 산하 연구기관, 관련 학회 및 대학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포럼 활동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각 부처 및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다양한 정책 결정 및 정책입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한편 각 관련 부처별로 포럼의 지부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구체적 주제에 대한 지부별 논의 후 정부부처간 종합 포럼을 통하여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포럼 활동의 활성화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포럼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문자 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관광객에 대한 매너와 자세에 대한 마케팅적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광농산어촌관광 기획관리사 제도 도입해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마을사무장, 체험지도사, 그리고 컨설팅회사 직원의 교육 지원 하고 농촌관광에 대한 계획수립, 시행 및 관리, 시장개척 등에 관하여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이수자에 한하여 인증하는 자격제도 실시하여 전문가를 양성한다. 내용은 농촌지역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방문자 관리를 위한 웹사이트 개발과 관리 능력 교육, 마을의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테마개발, 탐방로개발, 자연 및 유·무형의 마을 자원의 개발과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2) 교육 훈련 사업 실시

①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부처별 관광자원개발사업과 해외의 유사사업의 성공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중 하나는 추진 주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지역사회의 참여의지 및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조화되었을 때 가능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우리나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지속적이며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운영 및 관리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민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공 부문의 몫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 추진주체의 역량과 사업추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시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리더, 지역주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자협회와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관광자원 개발을 활용하는 실제적인 교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또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고도의 서비스 정신, 경영자로서의 기획력 및 경영 능력이 요구되므로 지역 특산품 가공, 체험 지도, 숙박, 식자재 제공 등 지역 활성화 및 지역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 폭넓은 체험은 물론 관광자원의 훼손과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올바른 관광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안내·해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능한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육성된 지도자 등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인재 양성 노력을 협력체계 내에서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관리 운영을 위한 후속적인 지원 형태로서 사업 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양질의 프로그램 즉, 보고 듣는 수동적인 관광행태가 아니라 관광객이 스스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능동적인 관광행태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② 교육 훈련 사업 실시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의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협력체계 내에서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를 창출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고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등 일련의 관광객과 관련된 행태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행정 수행기관인 문화관광부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추진이 바람직하다. 즉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사업대상지의 추진 주체 교육은 한국관광공사가 담당하되, 실무 습득을 위한 단기 과정은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외부 전문가 및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를 받아 지역 유형과 대상,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 교육 프로그램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의의 및 추진방법, 체험관광의 이론과 실제, 마을환경 정비, 도농교류를 위한 노하우, 생태, 환경 등의 지속가능성, 위생관리, 관련 정책, 경영·운영에 관한 노하우,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등의 내용을 다루되 세부적인 부문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되도록 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주정도의 직무훈련과 지역사회의 사업 추진 및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1개월 정도의 전문 과정, 1주 정도의 실무 워크샵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훈련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기초이론부터 목표의 설계, 시설 개선과 관리방법, 환경·안전 관리 등 계획관리기법을 총괄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사업의 체계적 발전 및 원활한 진행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이 사업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1개월 정도의 전문 과정은 관련 규정, 시설 관리, 경영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사항, 방문자 관리, 고도의 서비스 제공방법, 안전 관리, 프로그램 운영, 홍보, 홈페이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선진지역에 대한 시찰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실무 워크샵 과정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워크샵을 운영하도록 한다. '회계 및 재무관리 기법', '바람직한 민박 운영'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관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관광수요의 증가와 다양화, 관광자원 개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부처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처 성격에 맞는 개발 수단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역할 분담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체계 구축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현실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부처별 유사사업 추진 및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는 등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상호간 실질적 조정 기능 부재, 사후 관리 미흡,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사업별 특화개발 저조, 지역별 균형개발 저해, 추진 사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협력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력체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부처간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정책 추진과제로 도출하였다.

첫째, 향후 정부부처간 협력체계는 농림부 및 행정자치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분야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주도하에서 부처간 조정 및 통합 기능이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문화관광부 주도의 협력은 기존 농림부 및 행정자치부 중심 협력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수요시장의 요구 수용 결여 및 하드웨어 개발사업 위주의 사업 추진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협력의 영역 및 지속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 주도의 협력체계 구축은 각 부처별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당사자간의 접촉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정부부처간에 관광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미약하고 협력 잠재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기대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주도 협력체계의 요체로서 협력 활동의 중심 역

할을 담당할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협력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능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협력체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도출하였다. 정부부처 상호간의 협력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협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환경 조성 및 정보 지식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고,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적 계획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부처의 업무 영역을 보장하면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네트워크형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적 통합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관련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집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지원방안 및 관련 정부부처 상호간 협조방안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부부처간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추진과제로써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타 부처의 입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시장 및 지역민 요구도 조사의 시행을 제안하였고 관광자원 공급 기반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써 농산어촌 체험마을 확대, 지역 향토자원 발굴 등의 농산어촌 관광기반 조성 확대와 지역경관정비사업, 경관협약제도와 경관보전 직불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업추진 주체의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산학협력 강화사업과 기존의 하드웨어 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제안하였다.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성공적인 열쇠는 무엇보다 협력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간의 인식이고 이러한 인식 하에서만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부처간에 관광 분야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공감대 형성이 미비한 이유로 정부부처가 추구하는 목표의 상이성, 정책적 결절성, 문화적 이질성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부처간의 이러한 비 동질성 때문에 각 부처마다 협력의 필요성이나 중요 과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달라 중앙정부라는 틀 안에서 공통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과제의 발굴이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장애요인들은 창의적 협력사업의 발굴 및 보완적인 역할 분담이 전제되었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정부부처간 목표의 차이는 관광수용 시설의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인력의 확충 차원에서 보완적일 수 있으며 정책적 결절성이나 문화적 이질성은 다원적 관광상품의 개발이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 창출을 통해 관광매력도 증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체계의 지속성은 협력 내용이 부처 상호간에 보완적일 때에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협력 방안으로 조세 및 인센티브 등을 망라하는 재정 지원, 도로, 교량 및 기간시설 등을 포함하는 일방적인 지원 형태는 협력체계의 역동성이 결여되기도 하고 낭비적인 요소도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관광자원개발사업 외적인 부분에서 정부부처의 협력 여건이 변화될 경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협력 체계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 방안, 운영 방안 및 추진 과제의 형태로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한시적인 성격의 단기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장기 과제이며 이러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과제들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와 함께 정책적으로 다양한 적용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협력체계의 주체인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협력 인식 및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감사원(2003),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 김영준·최승묵(2004), 「관광자원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철원(1999),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조사표 작성 및 활용방안」, 한국관광연구원
- 농림부 외(2004),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농산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개선방안
- 농림부 외(2004),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 문신용 외(2002), 바람직한 청소년 행정체계 개선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 문화관광부(2005),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박기홍(1997), 『지방정부의 국제관광 협력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석희(2001),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 박시현(2004), “중앙정부 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지역가꾸기 사업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문화관광부.
- 박진도(2004), “농촌개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지역가꾸기 사업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문화관광부.
- 송미령(2005),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국토 2005년 1월호
- 신농업농촌특별대책연구단(2003), 「농업·농촌 특별대책 실천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재준 외(2004), 「농어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이종수 외(2003),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이호철·박재홍(2002),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개발과 지역발전, 경북대학교
- 이현주 외(200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사업운영 분석 및 협의체 모형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후석·이승곤·윤병국·이동희(2002), 「현대 관광의 이해」, 학문사
- 임상봉(2004),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농어촌연구원

- 임경수(2004), “마을진흥사업의 현실적 여건과 전망”, 「지역가꾸기 사업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문화관광부
- 윤원근·이재준(2004),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 농특위 토론회 자료집
- 장우환·유승우(1999), 관광농원과 자연휴양림의 연계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 전효재(2004), 관광숙박 수급분석 및 대응방향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정혜영(2003), 「관광진흥조직간 협력 증대방안」,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책연구단(2002), 선진 농촌관광발전 사례연구(영국, 프랑스)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 최규환(2004), 「관광학 입문」, 백산출판사
- 최재승(2002), 2002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한국관광공사(1993), 「관광수지 흑자달성을 위한 관광진흥 방안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농림부
- 행정자치부(2004),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 Gunn, C. A.(1994). *Tourism Planning*. Washington, DC: Tayler & Francis
- Inskip, E. (1991). *Tourism planning: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New York, NY: Van Nostrand Reinhold.
- Jamal, J. B., & Getz, D. (1995). Collaboration theory and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1),
- Abramson J. S, and Rosenthal B. B.(1995) "Interdisciplinary and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1). *Tourism 2020 vision: volume 7, Global Forecasts and Profiles of Market Segments*. Madrid: WTO